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전주열 · 김동석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전주열 · 김동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서 문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복지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지자체의 경제활동 및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문별 해설서가 부재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연구원에서는 그 동안의 법제연구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조문별로 해석함과 동시에 실제 운용되는 현황을 쉽게 설명하여 보조금 법률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별 해설에 대한 연구서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판되는 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추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에 큰 도움을 주신 손지영 박사님, 이승현 박사님, 이상현 변호사 그리고 임성철 석사님께 감사드리고, 책이 나오기까지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이상윤 실장님, 한정미 실장님, 노혜미 선생님, 강경민 연구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서 집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기획재정부 김태곤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필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기획재정부 박재홍 사무관님(보조금법 담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해설서는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설 내용에 관해 문의가 있는 사항은 김동석
(rockykds@hanmail.net) 으로 문의바랍니다.

CONTENTS

1. 서론	1
가. 보조금 제도의 법제적 의의	2
나. 보조금법의 법률관계	4
2. 법률 해설	9
제1장 총칙	10
1) 제1조(목적)	10
가) 법률의 목적	10
나) 규정 사항	11
2) 제2조(정의)	12
가) 보조금의 정의	13
나) 간접보조금의 정의	13
다) 보조금수령자의 정의	13
Q&A	14
• 국가의 범위	14
• 보조금 재배정 가능 여부	14
관련 판례	15
• 2017다242706: 보조금법상 반환금채권	15
• 2016도11103: 보조사업과 간접보조사업의 관계	1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 2015두50580: 부정한 방법	17
• 2013도6886 : 부정한 방법	17
• 2011두24514 : 간접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권자	18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Q&A	2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21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22
1)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2
Q&A	23
• 지출과 관련된 별도의 비목이 부재한 경우 : 사업관리비 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	23
• 지출과 관련된 별도의 비목이 부재한 경우 :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한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24
2)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24
3) 제6조(중앙관서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25
4)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26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상 목적 보호	27
나) 행정자치부 장관 의견서 제출 기한	28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29

CONTENTS

관련판례	30
• 2014구합329 조건 부가 가능 여부	30
• 2017다242706 보조금법상 반환금채권	31
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32
가) 설명 의무 주체: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	33
나) 설명 의무 내용	33
다)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권한	34
6)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4
가) 보조금 관련 예산 사항	35
나) 지자체 보조사업	35
(1)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	36
(2) 지자체 보조사업 재원 분담 근거	36
(3)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 문제	36
다) 기준보조율 변경시 조치: 지자체 통보	37
Q&A	37
• 기준보조율 위반 : 지자체 생활임금지급이 보조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37
• 국비지원 한도: 지급 대상 및 종류·국고보조율 지원 한도 등	38
관련판례	39
• 2011두24514: 반환명령권자	39
7)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3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8)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42
9)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43
10)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44
11)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45
12)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46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49
1)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49
가) 공모의 원칙	50
나) 예외적 공모 절차 배제	50
Q&A	51
· 정의: 보조금법 제16조 단서의 의미	51
·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52
· 보조금 신청대상 : 비축물자 관리기관이 보조금	52
· 보조금 신청대상 : 공무원의 보조사업 시행	53
관련 판례	54
· (춘천)2015노162 : 보조사업의 변경	54
· 2014노1186 : 자부담능력 유무 검토	55
2)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57
가) 필요적 조사 사항	58
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59

CONTENTS

Q&A	59
• 보조금 재교부 : 보조금 재교부 가능 여부	59
• 교부 조건 : 농공단지 조성당시 지원금을 농공단지 지정해제 또는 산업단지로	
• 전환 시 반환해야할 의무 여부	60
관련 판례	61
• 2014노1186 : 자부담금 능력의 판단 기준	61
3)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62
Q&A	64
• 교부조건 : 동물의 국고보조금 감액의 의미 및 계산식.....	64
4)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65
관련 판례	66
• 2011두24514 : 처분권한의 주체.....	66
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68
가)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 결정	69
나) 중앙관서의 예산 통합 운용.....	69
관련 판례	70
• (춘천)2015노162 : 영세의 범위	70
6)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71
가) 사정변경.....	7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1)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74
(2) 행정법상 사정변경	74
나) 교부 결정 변경·취소	76
(1) 변경·취소의 요건	76
(가) 변경의 요건	76
(나) 취소의 요건	79
(2) 변경·취소의 절차	79
(3) 변경·취소의 효과	81
Q&A	
· 보조사업비의 이월: 민간보조금의 이월	83
· 보조사업비의 이월: 사업 종료 후 인증 심사료 지출 가능 여부	83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84
1)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84
가) 용도 외 사용 금지의 의의	85
나) 성실 수행 의무	86
다) 보조금의 용도	88
(1) 법령	88
(2) 교부 결정의 내용	89
(3)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89
라) 소결	90

CONTENTS

Q&A	91
• 중요재산의 교부 목적 외 사용 범위 :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이나 물품이 방치되는 경우	91
• 소송비용의 집행 가능 여부 : 소송비용 집행 가능 여부	91
• 보조금 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 납입 가능 여부 : 건축물의 취득세	92
관련 판례	93
• 2016도11103 :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 대상	93
• (춘천)2015노162 : 용도 외 사용의 범위	94
• (창원)2014누11529용도 변경의 승인 시기	94
• 2014구합329 : 승인 없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95
2)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97
관련 판례	98
• 2016도11103 : 간접보조사업자의 적용 여부	98
• (춘천)2015노162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경비의 배분 변경에 해당 여부	99
• 2014구합329 : 사업 내용의 변경 승인 여부	101
3)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103
가) 보조사업의 인계	104
(1) 법률관계 해석	105
(2) 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	105
나) 보조사업의 중단	10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1) 중단 후 재개	106
(2) 중단과 실적 보고	107
다) 보조사업의 폐지	107
관련 판례	108
· 2015두60617 : 사후 승인 가능 여부	108
· (창원)2014누11529 : 폐지 승인의 방법	109
4)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110
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 상황 보고	111
나) 중앙관서의 장의 현장조사	111
다) 수행 관련 자료의 보관	112
관련 판례	113
· 2014구합329 :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미제출 사유	113
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115
가) 수행명령	116
나) 수행정지 처분	116
6)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118
가) 중복· 부정 수급 방지 조치 의무	120
나) 통합관리망 사용 원칙	121
다)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121

CONTENTS

Q&A	122
· 보조사업 대상자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선정과정 등의 정보 공개 범위	122
7)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124
가) 수집·처리 대상 자료·정보	126
나) 자료·정보 제공 주체: 관계 기관의 장	130
8)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131
가) 금융정보	132
나) 신용정보	133
다) 금융기관등	136
라) 요청 및 제공	136
마) 소결	137
9)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144
가) 보조금관리정보 파기 의무	145
나)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 폐기 의무	147
10)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148
가) 보조금관리 정보 관련 금지행위	150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및 책임	151
(1)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목적 내 사용 의무	15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2) 목적 외 타인 제공 방지 의무	151
(3)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통한 목적 외 이용	152
(4) 보호조치 수립 · 시행 의무	155
11)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155
가) 통합관리망 관리 업무	157
나) 자료 · 정보 요청 권한	157
다) 관계 기관의 장	160
라) 금융 · 신용정보	161
12)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163
가)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164
(1)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시스템	164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64
(나)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166
(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	168
(2) 보육 관련 시스템	169
(가)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상 전산시스템	169
(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업무 시스템	170
(3) 기타 정보화시스템	171
(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171
(나) 교육정보시스템	172

CONTENTS

(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	173
(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174
나) 연계를 통한 수집 가능 자료·정보	175
13)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176
가) 운영기관 협의회법적 성격	178
나)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179
다) 운영기관 협의회 권한	180
14)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182
15)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85
가)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86
나) 보조금의 정산	186
Q&A	188
• 보고서 작성 : 보조금 정산이 확정계약에 적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88
• 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 비용	188
• 국고보조금 반납 : 집행 잔액의 반납 비율	189
관련 판례	189
• 2014노1186 : 허위 보고	189
16)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19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가)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대상	192
나) 회계감사의 방법	193
17)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195
가) 계약 이론에 따른 해석 및 적용	196
(1) 신청 접수 of 법적 성격	196
(2) 계약의 성립	197
18)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199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200
1)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200
가) 교부 결정 취소의 의의	201
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202
다) 취소의 범위	203
Q&A	203
· 정의: 적용 시기	203
· 정의: 법령의 범위	204
관련 판례	205
· 2015두50580: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05
· 2003두1288 교부 결정의 취소의 판단 기준	206

CONT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누1033 납부서의 송달로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에 따른 처분 효력 발생 여부..... 206 • 2012구합3325: 교부 결정 처분의 존재 여부 208 	
2) 제31조(보조금의 반환)	210
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	212
(1) 교부 결정의 취소	212
(2) 반환절차	212
(3) 이자의 계산	213
나) 법적적 과제	215
Q&A	218
•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의 범위	218
•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의 범위	218
•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의 범위	219
관련 판례	220
• 2017다242706: 징수우선 순위	220
• 2015두50580: 별개 보조사업 간의 지급 전제요건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	221
• 2014노1186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심사에 따른 보조금 반환	223
• 2014구합329: 처분권한의 유무	223
• 2013누1033: 납부서가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3)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227
4)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231
가) 정산에 따른 반환 명령	232
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233
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234
Q&A	236
· 보조금 환수 시 근거법령: 국고지원금 환수경위에 따른 법리적 해석	236
관련 판례	237
· 2017다242706: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	237
· 2013누1033: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의 필요	238
6)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240
Q&A	243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범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적용 가능 여부	243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범위: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대상	244
관련 판례	244
· (제주)2012누456: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 판단 기준	244
7) 제33조의3(강제징수)	247
Q&A	248

CONTENTS

• 국세 체납: 국세 체납과 미확정 국고보조금 간의 징수 우선순위	248
• 국세 체납: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의 예산 집행	248
관련 판례	249
• 2017다242706: 반환금의 징수 우선순위	249
제6장 보칙	251
1)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251
Q&A	251
• 정의: 별도 계정의 설정	251
• 정의: 1보조금당 1세입 계좌 사용의 의무 여부	252
2)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252
가) 중요재산	254
(1) 주물·종물 개념과 중요재산	254
(가) 주물·종물 개념	255
(나) 종물의 요건	255
(다) 종물의 효과	256
(라) 보조금법의 중요재산	257
나) 처분에 대한 제한	258
(1) 부당이득	258
(2) 처분의 제한	259
(가) 유형론	25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나) 보조금법상 처분제한과 부당이득	261
다) 소결	262
Q&A	263
· 정의: 중요재산에 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63
· 정의: 양도의 범위	263
관련 판례	264
· 2015두60617: 중요재산 양도 시 중앙관서의 장의 사후승인 가능 여부	264
· (창원)2014누11529: 중요재산 양도 시 중앙관서의 장의 사후승인 가능 여부	264
· 2015다223350: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여부	265
2014마1631: 중요재산의 경매처분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여부	267
3)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268
가) 부기등기	271
(1) 부기등기의 의의	271
(2) 관련 판례	272
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273
(1) 주물·종물 개념과 부기등기	273
(2) 보조금법상 부기등기	274
Q&A	275
· 부동산 취득: 소유주체 여부	275

CONTENTS

4) 제36조(검사).....	278
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279
Q&A	283
· 공표 적용 시점: 공표 대상	283
6) 제37조(이의신청).....	284
7) 제38조(사무의 위임)	285
8)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287
9)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288
10)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289
11)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0
가) 조문의 의의	292
나) 뇌물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293
(1) 뇌물죄의 공통개념	293
(가) 뇌물.....	293
(나) 직무관련성.....	294
(다) 대가관계 및 부당한 이익.....	294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에 따른 가중처벌	294
(2) 형법 제129조 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295
(3)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	296
(4)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사후수뢰죄	29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5)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	297
제7장 벌칙	298
1) 제40조(벌칙).....	298
가) 보조금 범죄에 대한 처벌구조.....	298
(1) 보조금범죄의 행위태양	298
(2) 보조금범죄의 주요 사례	300
(가) 대학보조금 편취사건	300
(나) 농업시설설치 보조금 편취사건	300
(다) 에너지효율화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사건	301
나)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의한 처벌	301
(1)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의 내용.....	301
(2) '부정한 방법'의 의미	302
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의한 처벌	303
(1) 판례	303
(가) 국가보조금 편취 사기죄 성립 가능성 인정.....	303
(나) 부정수급에 대한 허급심의 사기죄 인정례	304
(2) 편취금액의 범위	306
(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의 편취금액에 관한 판례의 입장(전액설과 차액설의 경합)	306
(나) 국가보조금 과다청구의 경우에 편취금액의 범위(전액설)	307
(3) 특경가법 제3조(편취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의 적용	309

CONTENTS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의한 처벌	309
마) 보조금 편취행위에 대한 형의 부과	310
바) 보조금법 제40조 제2호에 의한 처벌	311
관련 판례	312
• 2016도8419: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312
• 2015노162: 보호법익	312
• 2015노4075: 보호법익	314
2) 제41조(벌칙)	315
가) 조문의 의의	316
나) 관련사례: 사회적 선도사업체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건	317
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와의 관계	318
(1)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318
(2)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	318
(3) 횡령행위에 대한 형의 부과	319
관련 판례	319
• 2016도11103: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19
• 2015노162: 보조금법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20
• 2014구합329: 규정 취지	322
3) 제42조(벌칙)	32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가) 승인없는 보조사업 변경 등에 대한 처벌	325
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325
관련 판례	326
• 2016도11103: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	326
• 2015노162: 보호법익	328
• 2012헌마1030: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고의범의 범죄전력과 보조금법 과의 관계	329
• 2014노1186: 조문 취지	330
• 2014구합329: 조문 취지	331
4) 제43조(양벌규정)	332
가) 조문의 의의	332
나) 종업원 및 법인의 범위	333
다) 처벌의 범위	334
라)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334
관련 판례	335
• 2015노162: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35
3. 결론	337
4. 참고문헌	341

www.klri.re.kr

—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1
서론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1 서론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가. 보조금 제도의 법적 의의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국고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서, 1963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외의 자의 사무나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¹⁾ 국가가 금전을 지급하여 어떤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조를 받아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이 민간의 활동인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의 활동인지에 따라 보조금 제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먼저, 국가가 민간의 어떤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에서는 법치주의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이 만나는 지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가 활용된다.

이 관계에서는 국가의 공적 재원을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법제도로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비롯한 공적 주체는 민간단체나 사법(私法)상의 법인과 달리 공익적 활동을 위해 존재한다. 법적으로 사익과 구분되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익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공적 주체의 특수한 법적 지위이다.

1) 본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조금 제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조문을 해설하였다. 이와 달리, 행정법 이론의 관점에서 보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장선희,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유형 및 반환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81~109면; 김병기,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43집제1호 2009년 2월, 593~613면; 한건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보조금행정”, 저스티스 제31권제2호 1998년, 43~58면 등을 참조.

이 특수한 지위로부터 국가와 같은 공적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작용하여야 하는 ‘법치주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와 달리, 민간의 활동은 자유가 원칙이다.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경제적 활동이나 비영리 활동 모두 자유롭게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사적 영역에서의 원칙이다.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표현한다.

국가와 같은 공적 주체는 공익적 활동을 위해 공권력을 독점하는 특권적 지위를 갖지만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법의 규율을 받는다. 작용에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하고 작용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 원칙’과 엄격한 법적 규율은 공적 주체의 작용에 관한 합법성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각 영역에 공익적, 비영리적, 사회적 작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국가가 이러한 요구를 직접,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공적 주체가 충족시킬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국가는 재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또는 공익적 활동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을 통한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설명한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권적 지위와 수단을 갖는 국가가 사적 자치를 누리는 민간의 창의를 지원하고 활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우리 「보조금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 국고보조금은 국가 내에서 중앙이 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²⁾ 현재 「보조금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에 공여되는 보조금은 지방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재원이 서로 합쳐져서 사용된다는 뜻에서 ‘매칭펀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매칭사업’ 또는 ‘지자체 매칭사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교부 및 수급 관계에 관해서는 박현정,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2호 2012년 4월, 159~191면; 김충목·강민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43집제2호 2009년 2월, 587~609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관계에서는 공적 재원인 '국고'의 재원이 지방에서 수행하는 공적 사무나 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거나 민간의 사업을 장려, 조성하는 관계의 국고 보조금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의 작용은 법적으로 '공익'적 작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사무나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무나 사업과 같이 법적 성격은 '공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관계에서 법제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구분된 법적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재원 사용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적 재원이 공적 활동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적 재원의 사용이 합법적,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밝히는 것이 법제도적 과제가 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국고보조금이 활용되어 수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궁극적 권한과 책임이 어떤 법적 주체에게 있는지를 먼저 밝히고, 이 권한·책임의 귀속에 대하여 재원 부담이 상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다만 본 해설서에서는 「보조금법」의 조문들을 해설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경우에 중점을 두고 해설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조금법」에 따른 법률관계는 보조를 받는 주체가 공적 주체인지 사적 주체인지에 따라서 법적 원칙이 상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비해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법률 해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보조금법의 법률관계

우리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이를 집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국가와 사업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가운데 법적 규율이 필요한 단위를 구분해 보면, 보조금 지급의 주체에 대한 규율과 보조금 사용 주체에 대한 규율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조금 지급 주체는 지급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공적 재원으로서의 국고를 공적

목적에 맞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진다. 국고보조금은 지급 주체인 국가가 조성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일방적 결정으로 지급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정에 관련된 권한은 국가의 수익적, 일방적 결정 권한이 된다. 물론 「보조금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전에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급 결정 자체를 쌍방적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다.³⁾

국가는 공적 재원의 지급에 관한 일방적 결정 권한에 상응하여 공적 재원의 합법적, 합리적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단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보조금 행정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개별 보조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보조금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는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 평가하는 과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에 붙이는 내용(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하여 공적 재원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집행 과정에서는 예정된 내용과 달리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변경에 대해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부정한 사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방법을 통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이와 달리 보조금 행정 전체에 관해서 국가는 재정 관리의 측면과 재정 사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정 관리의 측면에서는 공적 재원인 보조금이 국가 예산 절차에 따라 계획되고 편성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⁴⁾ 재정 사용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이 특정 사업자나 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중복하여 지급되거나, 부정하게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

3) 보조금의 교부와 수급 관계에 ‘협약’ 형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김지영,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검토 -”, 행정법연구 제37호 2013년 11월, 103~134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박기병,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과 경쟁자소송”, 관대논문집 제24권 제2호 1996년, 1~17면에서는 독일 행정법원법을 중심으로 “정부보조금이 행정계약의 형식으로 지급된 경우”에 대한 절차적 규율에 대해 논하고 있다.

4) 이러한 측면에서 허강무, “보조금행정의 공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허강무, “보조금행정에 대한 법적통제”, 법학연구 제23집 2002년, 133~147면은 이른바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보조금[의] 집행과 예산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의 부실”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 따라서 국가는 보조금의 교부 및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조금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 유통되고 관리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행정 전체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례를 두는 등 정보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상대방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공법적 권리를 갖는 동시에 보조금을 합법적, 합리적으로 사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합법적 사용’의무에 관해 「보조금법」에서는 합법적 사용 의무의 기준으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법적 사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법」에서는 민·형사적, 행정적 제재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부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을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부정 수급·사용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 국가가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사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벌에 처하는 형사적 제재도 마련하고 있다.⁵⁾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부정수급·사용한 자에 대해 장래에 보조사업 수행이나 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는 행정적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보조사업자의 ‘합리적 사용’ 의무에 관해서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의 ‘실적’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즉,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결과를 ‘실적보고서’ 형태로 국가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는 집행 후에 “교부

5) 「보조금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방안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이정기,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안암 법학 제53집 2017년, 397~433면; 박상진,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1집 제1호 2017년, 419~439면; 선중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7집 제3호 2016년, 129~150면; 김성운,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년, 233~263면; 성낙현, “보조금사기죄의 형벌에의 도입에 관한 논의”,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2년, 61~84면, 박성민·이현정, “국가보조금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외법논집 제35권 제3호 2011년, 179~192면.

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다.(제28조) 이렇게 확정된 금액이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그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즉 보조사업자가 비록 정한 방법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보조금 금액에 비해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현행 「보조금법」에 따른 법적 인 관계이다.

위 두 가지 측면, 즉 보조금 교부 결정권한과 공적 재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권리·의무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가는 보조금 행정을 통해 전체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⁶⁾ 앞서 보조금 행정의 법제적 의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은 공적 재원을 사적 주체가 활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적 경제 영역에 대한 공적 개입 효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개입의 정도나 방향에 따라서 사적 경제 영역의 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법제도 영역으로서는 “국가의 형성 재량의 한계”, “사적 영역의 질서 유지에 관한 공적 주체의 책임” 또는 “공적 주체의 사경제적 활동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6) 이러한 측면에 관해서는 정호경·선지원,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 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방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2014년 12월, 243~262면; 오준근, “경제행정법상 자금조성행정수단으로서의 보조금 제도 - WTO 협정에 부합하는 넓은 의미의 보조금 개념에 입각하여 -”, 공법연구 제23권 제3호 1995년, 403~442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www.klri.re.kr

—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2

법률 해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2 법률 해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법률의 목적

- ▶ (궁극적 목적)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
 - 관리에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포함됨
 - 관리의 적정성에는 관리의 효율성이 포함됨
- ▶ (규정 사항)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보조금 행정에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이 포함됨 → 행정주체 규율
 - 보조금의 사용은 지급된 보조금의 활용을 말함 ⇨ 민간 사업자의 사경제활동 규율이 포함됨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궁극적인 목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에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포함되며, 적절한 관리의 대표적인 징표로 관리의 효율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 개념에는 ‘효율성’ 이외에도 보조금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보조금 교부의 실체적 적법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적 적법성이란 대표적으로 보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 결정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급부행정 평등의 원칙과 같은 원칙을 말한다. 급부행정 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은 보조금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주체에게 적용된다. 행정의 일반원칙은 개별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이다.

즉, 본 법률의 제1조(목적)는 효율적인 관리 이외에도 일반 법원칙에 따른 적법한 관리가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규정 사항

위와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법은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보조금 행정에는 ‘편성’이나 ‘지급’과 같은 개별적 결정과 ‘지침’이나 ‘기준’ 제정과 같은 일반적 규정 정립 작용이 포함된다. 보조금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주체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보조금 사업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활동도 규율하게 된다. 이 점에서 법리적 쟁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경쟁 활동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율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적 원칙인데 반해,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사용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사업 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이 이 법에서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법은 보조사업 활동에 대한 규율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자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보조금의 개념 지표

- '국가 외의 자'에게 '국가'가 교부 또는 부담
-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 또는 부담
 -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전

▶ 간접보조금의 개념 지표

- '국가 외의 자'가 교부
- 보조금을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

▶ **중앙관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가)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법인 및 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⁷⁾.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특정 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 한편, 보조금법은 위 두 개념징표로 '보조금'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가 국가 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포섭될 수 있다.

나) 간접보조금의 정의

간접보조금이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국가 외의 자가 다시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시 교부하는 것은 해당 보조금의 목적에 재교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의 개념징표는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것이다.

다) 보조금수령자의 정의

간접보조금으로 교부할 것을 예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접보조금을 교부받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이자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

7) 보조금법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자체나 민간에게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고, 지방보조금만 교부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적용된다.



국가의 범위

- ▶ **현황** : 보조금이란 국가 외에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있음
- ▶ **질의** : 국가의 의미에 포괄적으로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 ▶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공기관 등은 국가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재배정 가능 여부

- ▶ **현황** :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자 함
- ▶ **질의** : 보조금 교부결정권자인 군수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해당 보조금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사업추진 및 준공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군수)가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2조 4호 참고)
-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 군비 등 지방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이면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 추진할 사항입니다.)



관련판례

2017다242706: 보조금법상 반환금채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6도11103: 보조사업과 간접보조사업의 관계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5두50580: 부정한 방법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2) 갑 주식회사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6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그중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어서 갑회사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종합법률정보 판례)

2013도6886 : 부정한 방법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

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 887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종합법률정보 판례)

2011두24514 : 간접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권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종합법률정보 판례)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 예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률

-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할 경우, 적용이 배제됨

▶ 교육행정의 사무 구분에 따른 권한 주체 명시

- 지자체 교육행정 관련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권한 주체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포함한 관리 작용 일체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항을 이 법과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이 달리 정한 사항이 적용된다.⁸⁾ 다른 법률에서 보조금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예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이 법률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법」의 특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8)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보조금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어느 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다를 때 어떤 법률이 우선하는지가 문제된다.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존재'가 단순히 다른 법률에서 보조금법과 다른 내용을 정한 것보다 더 강화된 조건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약 더 강화된 조건이라고 해석하면, 단순히 다른 법률에서 보조금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조금법이 적용되고 그 조문이 '특별한 규정'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⁹⁾·제35조제2항¹⁰⁾ 및 제35조의2제2항¹¹⁾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행정에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되고, 교육행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전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할한다. 지방에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지자체장인 반면, 교육행정의 주체는 교육감이다. 이를 반영하여 보조금법을 해석할 때 지방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규정된 것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해석한다.

9)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출 사업.

10)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의 세출 사업.

11)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

- ▶ 질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시에 보조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에서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31조·제31조의2·제32조·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제11조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도 동 사업 관련법에 보조금 적용 예외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1)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 접수 권한 주체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
- 단위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 방식 결정 권한을 가짐

▶ 신청시 '목적', '내용', '사업 비용'을 필요적으로 명시

▶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중앙관서의 장, 즉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는 최종 단위 행정기관이며 권한 주체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 편성 신청의 방식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률상 예산 편성 신청의 접수 권한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사항과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계상의 신청을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의 주체와 보조금 예산 편성 신청의 주체가 달라진다.



지출과 관련된 별도의 비목이 부재한 경우 : 사업관리비 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

- ▶ 현황 : 동 사업비가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예비비, 각종건축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비용 중 국비는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일부 민간예산은 국비 이외의 금액과 사업관리비, 예비비, 각종건축부담금에 충당되는 바,
 - ▶ 질의1 : 자부담 사업관리비에서 외부 전문가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 질의2 : 전액 계상이 불가능하다면 참여비율에 근거한 계상이 가능한지?
- ▶ 인건비 지출과 관련한 별도의 비목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 인건비」는 자부담 사업관리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조건에 비추어 외부 전문가 인건비는 본 보조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보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직원 인건비는 보조사업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으나,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주체인 해당 중앙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과 관련된 별도의 비목이 부재한 경우 :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한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 **현황** :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이 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1차년도가 종료되고 2차년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년도(10개월) 사업으로 끝이 났고, 2차년도(1년) 사업에 연장 계약으로 하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질의** : 이 경우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퇴직금을 총당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어디에서 총당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관련 보조사업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에도 총당되며, 인건비의 범위에는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방법과 적용시점은 「근로자퇴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사업비에서 퇴직금을 총당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 특정 조건에서 국가는 신청이 없어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보조금 예산 계상은 예산편성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무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신청된 예산 계상에 근거하여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사업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제3조)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
2.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예, 재해 발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6조(중앙관서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 요구
 - 지자체 공통사업인 경우 지자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요구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
 - 보조사업 수행 희망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 중앙관서별 조정내용 등

‘보조금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편성된 보조금 예산의 교부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서 규율한다.

4)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자체 부담 수반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보조사업 주무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간 협의 필요
 -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상 목적 보호

보조금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법 제9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정도를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여권발급 사무’, ‘토양개량사무’,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 국가 행정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종류와 각 사업별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분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목적의 관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검토하는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 권한은 구체적으로 협의 요청 주체의 절차적 의무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서 제출로 이루어져 있다.¹²⁾ 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지자체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절차상 의무는 이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보조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¹³⁾ 즉,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지자체 부담 수반 보조금 예산 신청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는 법률상 신청의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행정부 내부에서 부처간 협의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은 별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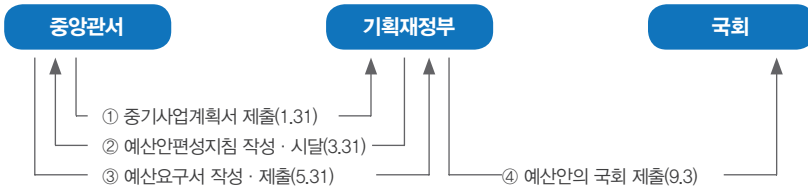
12) 「지방재정법」은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방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 이를 재정당국과 지방본권 담당 부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법률상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자체 재정상 목적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 행정자치부 장관 의견서 제출 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기한은 3월 31일이다.¹⁴⁾ 이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기한은 5월 31일이다.¹⁵⁾ 즉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 제출을 완료하기 10일 전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련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편성과정



〈그림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재정/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¹⁶⁾〉

14)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

15) 「국가재정법」 제31조.

16)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2_Contents.jsp>, 2017년 5월 12일 최종방문.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시, 그 내용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 단체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

한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구합329 조건 부가 가능 여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보조금법 제9조), ② 보조금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는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이 포함되고 그 기준보조율은 50%이며(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19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부산시 보조금 조례'라 한다)는 시장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기장군 보조금 조례'라 한다)는 군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제8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점, 보조금법 제2조, 부산시 보조금 조례 제2조, 기장군 보조금조례 제2조가 정한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 부산시보조금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는 지방재정법,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과 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과 관계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비 교부권자(부산광역시장)가 반드시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권자 내지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17조)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Casenote)

2017다242706 보조금법상 반환금채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의 자료 제출 및 설명 의무) 보조사업 예산 계상 신청자(법 제4조)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 의무를 짐
-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외적 직접 요구 권한) 예산요구액 조정 기간 중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산 계상 신청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할 수 있음

가) 설명 의무 주체: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설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보조금을 신청한 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이하,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 법 제2장에서 규율하는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여러 번 법률관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관계 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⁷⁾

법 제8조에서는 설명 의무를 지는 주체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한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조의 취지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 예산 계상 및 편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예산 과정의 실질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 의무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모두가 지도록 해석하면 법률상 의무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조의 설명 의무는 ‘신청’ 행위를 통해 법상 절차에서 예정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조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설명 의무 내용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를 받으면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하거

17) 정의 규정에서 규정한 주체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중앙관서의 장’, ‘보조금수령자’ 이상 네 주체이다.

나 설명해야 하는 자료는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한 보조사업의 예산 계상과 관련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권한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예산 계상의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이를 계상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 요구는 “보조금의 예산요구액 조정 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6)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전체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 사업’과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예산 편성 시 기준보조율 변경의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

가) 보조금 관련 예산 사항

전체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란 보조금이 지급되는 개별 사업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보조 사업은 사업단위로 전체 목록이 매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경비의 종목'이란 보조금 지급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사업별로 경비의 종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을 뜻한다.

'국고보조율'이란 보조사업별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보조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시 보조금 사업별로 전체 사업 예산이 함께 예산에 포함된다.

나) 지자체 보조사업

본 조 제1항은 국가 예산안 마련 단계에서 예산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보조금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단서에는 이 규정에 대한 예외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이하, '지자체 보조사업'¹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매년 예산이 아닌 본 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단서 규정은 형식상으로는 예산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이기도 하다. 국가와 지자체 간에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무들에 대해 재정 부담률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규정은 보조사업 별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 부담 비율도 법령으로 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일부 재원을 보조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을 본 법 시행령으로 열거하고 있는 방식은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을 '지방 보조사업'이라고 칭할 경우,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보조사업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본 조에서 사용한 용어에 충실하게 '지자체 보조사업'이라고 칭한다. 지자체 보조사업이라고 칭하더라도 법적 성격에 혼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령상 근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에서는 대상 사업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 별표1에서는 121개의 개별 사업을 정하고 있고, 이 외에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액 또는 정률로 국가가 보조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본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단서 규정이 지자체 사업들 가운데 특정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2) 지자체 보조사업 자원 부담 근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보조율’이란 예산 편성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국고 보조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별로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 정도를 본 법 시행령 별표에서 지자체 보조사업별로 국가의 자원 부담률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일정 비율로 소요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 대해 국가와 지자체 간 비용 부담의 근거 규정이 된다.

(3)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 문제

위와 같이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해당 사업의 지방자치법적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사업의 지방자치법적 성격이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를 말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권한의 귀속은 사무 수행의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 해석상으로는 본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각 지자체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을 판명하는 원칙적 기준은 각 사무를 규정한 근거 법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근거 법령상에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와 별개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율을 결정하게 되면 사무의 성격에 따른 권한 귀속과 재정 부담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의 권한과 재정 부담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행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 집행을 유인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재정 부담 주체의 집행상 관여로 인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생긴다.

다) 기준보조율 변경시 조치: 지자체 통보

본 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범위와 국가의 재원 부담 정도를 매년 예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 신설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부를 보조하지 않는 한 지자체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기준보조율 위반

: 지자체 생활임금지급이 보조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현황** :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시군에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동점일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를 우대하고자 하는 바,
- ▶ **질의** : 보조금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 및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조금법의 기준보조율에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시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조사업별로 보조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참고하여 보조사업에서 국가의 보조금액을 예측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나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수익적 조례로서 동조례는 보조금법의 기준보조율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함이 없이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보조금법」을 위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 한도: 지급 대상 및 종목·국고보조율 지원 한도 등

- ▶ 질의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시 국비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법적 근거
-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게 됩니다(법 제9조).
- ▶ 다만,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 지급제의 사업을 시행령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관련판례

2014구합329 조건 부가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자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종합법률정보 판례)

7)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차등보조를 적용 권한
 -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를 결정 권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고려) 개별 지방자치 단체에 차등적 보조를 적용할 권한 인정
 - 보조를 인하는 재정자주 지자체(균형재정 이상)에만 적용 가능
- ▶ 차등보조를 적용기준 및 적용기준별 산식은 대통령령에 위임
- ▶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는 국회에 보고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예산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조율은 모든 지자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본 조에서는 특정 지자체에게 다른 지자체와 다른 국고보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다.

제1항에 따라 차등보조를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보조율보다 높거나 낮은 보조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이때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나 차등보조율 적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제2항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령은 “특히 재정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인상보조율 적용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2항)¹⁹⁾

19) 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개정 2011.10.2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p>가. 계산식: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p> <p>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p>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p>가. 계산식: $\{\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times 100$</p> <p>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p> <p>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p>

특히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3은 차등보조율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역의 발전도'와 '국가재정 사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별표는 차등보조율 적용기준과 계산식을 규정하는 별표이다. 별표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에 더하여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범위와 국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모든 지자체에 대해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자체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국고보조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인상보조율이 적용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재정운용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5조제3항)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8)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 (시·도지사의 의견 제시 권한) 예산 편성 과정 중 해당 관할구역 보조사업 관련 의견을 중앙관서의 장 및 기재부장관에게 제시
 -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 관련 의견

- ▶ (기재부장관의 의견 반영 권한) 시·도지사 의견 반영 가능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
 -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9)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 ▶ (예산안,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에게 통지)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보조사업 예산계상 신청자에게 통지
 -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국가재정법 제33조)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
- ▶ (확정 예산,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에게 통지)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

▶ (지자체 보조금은 기재부, 행자부장관에 통보)

– 예산안, 확정 예산 통지시 지자체 보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광역 단위 일괄 통지) 기초지자체 보조사업은 광역지자체에 일괄 통지 가능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가 기초지자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관할 광역지자체에 일괄 통지할 수 있음

제12조는 보조금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을 사업별로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통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보조금법』 제5조에 따라 예산 계상을 신청한 자” 즉,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⁰⁾

제4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광역자치단체에게 일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조사업이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사무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0)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 제8조의 설명 의무를 지는 자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아닌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지자체장의 예산 계상 의무)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우선 계상 의무
 - 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본 조는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지자체 예산과 구분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다른 지자체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반대로 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사업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부담의무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11)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출연금 수령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금지
 -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가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 ▶ 기획재정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국가

가 어떤 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2조²¹⁾〕 대표적으로 「정부출연기관법²²⁾에 따라 설립된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출연하는 기관은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해 보조금 수혜해택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²³⁾.

12)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존속기간 3년 원칙

- 3년 원칙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 21)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3) ①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이외의 사업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②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 평가 및 연장 권한

-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평가
- 보조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시행령 위임
- 3년 이내 기간으로 (재)연장 결정 가능

▶ 보조사업 평가 결과 국회 제출 의무

- 정부 제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년 존속기간에 대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평가를 거쳐 연장 및 재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평가와 연장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평가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동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장관은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나 행정부 외부 인사 비율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없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²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및 정보 요청의 목적은 '그 보조사업' 즉, 평가위원이 평가를 맡은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조사업평가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 권한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행정적 자문위원회이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평가 및 연장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며, 평가단 구성·운영 역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단 심의가 결정의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

24)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평가의 대상사업, 수행체계, 평가방법, 사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1)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모를 통한 보조금 교부 원칙) 중앙관서의장이 공모, 보조금 교부 신청자가 응모

- 기본 응모 신청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경비 포함)
- 중앙관서별로 그 외 첨부 서류 및 기일 결정

▶ (공모 원칙에 대한 예외) 예산계상 신청자가 지자체인 경우 및 중앙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예산계상 신청자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에 관해 제16조는 공모의 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가) 공모의 원칙

공모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원칙적으로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조금 예산의 편성 절차(제2장)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즉,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가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제4조), 중앙관서의 장이 이 신청을 접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하여 정부 예산안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재부장관에 대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 의무도 부담한다.(제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자와 보조금 피교부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예산계상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와 보조금 교부 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된 예산에 포함된 보조금은 그 교부 기회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교부 절차 이전에 예산 편성 절차에서 예산 계상을 신청했는지 여부나 예산 계상 신청 절차에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자료 및 정보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된다.

나) 예외적 공모 절차 배제

공모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객관적인 사유와 주관적인 사유에 따라 인정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교부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자체의 장은 교부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제9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21호에서 열거한 개별 사업은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상 국고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비록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는더라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7조)

공모의 원칙에 대한 주관적인 예외 사유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관해 중앙관서의 장이 내리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두 가지 경우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예산계상 신청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상 신청자가 아니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그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정의:

보조금법 제16조 단서의 의미

▶ **질의 :**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의미 해석

- ▶ 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은 공모에 의하여 보조금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6조제2항단서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모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조금법 제16조제2항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서만 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모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 **질의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중간에 설계내역이 변경되어 면적 및 사업비(도급금액)가 증가하였으나 종전에 계약된 도급계약서를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법 제16조). 그리고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에 따라 추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통해 정산절차가 이루어지며(동법 제27조, 제28조), 자기부담금이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지침 제23조).

- ▶ 따라서 사업비의 변경은 자기부담금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추후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신청대상 : 비축물자 관리기관이 보조금

- ▶ **질의 :**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제도가 40여년 전부터 운영되었고 관련 예산은 해당 기관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비축물자관리기관(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신규 물자 구입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해제 및 대체물자 구입 및 운영을 위한 비용문제가 발생하여 중앙부처가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4조(보조)에서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제43조(보조 등)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사업이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소관 중앙부처에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등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신청대상 : 공무원의 보조사업 시행

- ▶ 질의 : 자활근로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시행해도 되는지 여부

- ▶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계산 신청을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제8조) 그리고 위 신청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따라서 어떤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춘천)2015노162 : 보조사업의 변경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42조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40조, 제41조와 달리,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 1. 1. 제정 및 시행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세부집행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시·도지사라고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삼척시장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따라서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 내역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장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업기간 등에 모두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57, 3258쪽), ③ 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보조금을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통합하는 보조금 규모의 기준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 2개의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용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강원도지사도 위 2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3267쪽, 3277쪽), 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별도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3379쪽 이하), ⑥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삼척시가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도 위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⑦ 각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날짜, 공사 착공날짜, 준공예정날짜, 사업구역이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 3257, 3258, 3562, 3730쪽), ⑧ 피고인들 및 전직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공소의 13도 검찰에서 강원도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사업은 별도의 구분된 보조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되어야 할 것이다),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사업인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4노1186 : 자부담능력 유무 검토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총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의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4 판결 등 참조).

상주시의 경우 자부담능력의 소명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신규 통장(이하 '자부담금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담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다.

위와 같은 자부담금 통장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자부담능력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바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그 '타인'이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사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여 바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물론, 자부담금 통장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취지 등에 비추어 결국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자부담 능력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보조금관리법률위반 내지 사기죄 성립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부담금 통장의 작출 경위,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중앙관서의 장(長)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의 행위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부담금을 별도의 통장에 넣어둔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비록 당해 사업집행의 위임을 받은 상주시가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간이한 방법으로 자부담금 해당액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 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성립여부에 판단이 통장의 진위(眞僞) 여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은 아닌 것이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 (중앙관서별 교부 결정) 제출된 교부신청 중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하되 중요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의무적으로 조사
 - 사업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금액 산정 적실성
 - 전액 보조가 아닌 경우,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 ▶ 공모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과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결정
 - 그 밖의 세부사항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수익적 성격의 일방적 행정 결정이다. 교부 결정의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접수한 교부신청서에 대해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교부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사항을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공모를 거친 경우에는 중앙관서별로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 필요적 조사 사항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각 교부 결정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중요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에서 '착오'는 신청자의 의사와 달리 잘못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교부신청이 법령에 적합인지 여부, 신청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비하여 적정한지 여부, 신청된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사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한편,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는 경제적 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량화하여 상당한 정도로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 유무를 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담능력 유무에 대한 해석은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본 조에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중앙관서의 장이 조사하도록 한 취지는 공적 재원인 보조금이 적정하게 활용되게끔 절차적 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공적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부 결정의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은 자신의 교부 결정 권한의 대상인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타당한 교부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⁵⁾.

신청자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면, 거짓 신청으로써 부정

25) 자부담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의 자체재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등 포함)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부담의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 방법에 해당한다.²⁶⁾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0조).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결정은 취소되고 보조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의 대상이 된다.

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금 신청과 교부 절차는 공모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공모를 거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적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을 위해 자문하는 행정적 자문위원회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령상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기구이다.



보조금 재교부: 보조금 재교부 가능 여부

- ▶ **현황** : 보조금법 상에는 재교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간접보조금과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는 바,
 - ▶ **질의** : 해당 규정만으로 〇〇원이 〇〇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타협회 단체에 재교부 가능한지 여부
-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중앙관서 장의 승인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자로 판단된 경우에 타협회 단체에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6)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면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부 조건 :

농공단지 조성당시 지원금을 농공단지 지정해제 또는 산업단지로 전환 시 반환해야할 의무 여부

- ▶ **현황** : 당 사는 조성 당시 △△농공단지에 1992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확장을 위한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하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공단지 지정해제 또는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질의** : 전환유형(농공단지 지정해제, 산업단지 전환)에 따라 지원금 반환의무가 달라지는지 여부

- ▶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보조금법 제16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보조금법 제17조).
- ▶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18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당시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시 어떠한 교부조건을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정하여 질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판례

2014노 1186 : 자부담금 능력의 판단 기준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의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4 판결 등 참조).

상주시의 경우 자부담능력의 소명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신규 통장(이하 '자부담금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담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자부담금 통장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자부담능력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바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그 '타인'이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사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부담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여 바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물론, 자부담금 통장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취지 등에 비추어 결국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자부담 능력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보조금관리 법률위반 내지 사기죄 성립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부담금 통장의 작출 경위,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중앙관서의 장(長)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의 행위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부담금을 별도의 통장에 넣어둔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비록 당해 사업집행의 위임을 받은 상주사가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한 간이한 방법으로 자부담금 해당액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 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성립여부에 판단이 통장의 진위(眞僞) 여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은 아닌 것이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3)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교부 결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상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일 것

▶ '사업수의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 기 교부 보조금의 범위 내일 것

보조금 교부 결정은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이다. 이 결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에 해당한다.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를 '부관부 행정행위'라고 한다. 오늘날 시민과 행정 간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면서 부관부 행정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본 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부관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붙일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예로 특별히 사업수의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만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교부된 보조금 금액의 범위 내이다. 즉 교부받은 보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수익 국가 반환 조건은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조건과 달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수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닌 한 국가 반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부관이 붙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방적 결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청자는 교부 자체를 신청할 뿐이다. 이 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권자는 교부 자체에 대한 결정에 더하여 조건을 붙이게 된다. 보조금을 교부받을 신청자가 교부 결정에 붙은 조건을 보고, 이런 조건이라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된다.



교부조건 : 동물의 국고보조금 감액의 의미 및 계산식

- ▶ **현황** :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붙임1〉 교부조건 상 일반사항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물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질의** :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붙임 1〉의 보조금 교부조건 중 일반사항 3항에 적시된 '동물의 국고보조금 감액'의 의미와 정산 시 감액조치에 대한 계산식이 무엇인지 여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고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합니다.

- 1 안 : 지침 〈붙임 1〉 일반사항 3항에 의해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자부담액보다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부부담 집행액×동물(=민간부담 집행잔액/민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부담액(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2안 : 지침 〈붙임 1〉 일반사항 3항에 의해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자부담액보다 우선 집행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래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고보조금액만큼은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 통지 의무

– 교부 결정의 내용(결정에 붙은 조건을 포함)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

▶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 기재부·행자부 장관에게 통보

– 교부 결정 내용을 단위사업별·보조사업별로 작성하여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 결정의 내용’에는 교부 결정에 붙은 조건이 포함된다. 반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신청’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²⁷⁾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⁸⁾

27)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본문.

28)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단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법」 제16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관련 서류 제출의 기한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모 절차를 거쳤음에도 교부 결정 전에 신청자가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공모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나친 행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11두24514 : 처분권한의 주체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보조금법 제9조), ② 보조금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는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이 포함되고 그 기준보조율은 50%이며(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19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부산시 보조금 조례'라 한다)는 시장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기장군 보조금 조례'라 한다)는 군수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4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제8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점, 보조금법 제2조, 부산시 보조금 조례 제2조, 기장군 보조금조례 제2조가 정한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 부산시보조금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는 지방재정법,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과 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정과 관계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비 교부권자(부산광역시장)가 반드시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권자 내지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17조)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 규모 미만의 경우, 단위사업 내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를 결정해야 함
 - 경비 명세 세분이 가능한 최소 보조금액 설정
 - 개별 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사업 내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시행령 제8조①)
-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 예산 통합 운용 가능

가)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 결정

본 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에 여러 개의 교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합 교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할 때, 합하는 단위는 여러 개의 '경비 명세'이다.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보조사업'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 신청의 단위는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법 제16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대상은 신청서 단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7조) 그러나 본 조에서는 단위사업 내 여러 개의 경비 명세가 있을 때, 이들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보조금이 500만원에 이르지 않는 적은 규모로 교부되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나) 중앙관서의 예산 통합 운용

중앙관서에서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중앙관서 가운데 대표적인 중앙부처를 예로 들면, 중앙부처가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은 「국가재정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가재정법」은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포함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집행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이월을 비롯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3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 신청 당시에는 여러 보조사업을 예정하고 예산을 책정 받았을지라도 중앙관서별로 배분된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 계상 신청의 근거가 된 보조사업들 중에서 '사업목적'별로 유사한 보조사업을 하나의 예산 단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련판례

(춘천)2015노162 : 영세의 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 1. 1. 제정 및 시행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세부집행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시·도지사라고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삼척시장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따라서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 내역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장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업기간 등에 모두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57, 3258쪽), ③ 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보조금을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통합하는 보조금 규모의 기준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 2개의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용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강원도지사도 위 2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67쪽, 제3277쪽), 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별도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제3379쪽 이하), ⑥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삼척시가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도 위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⑦ 각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날짜, 공사 착공날짜, 준공예정날짜, 사업구역이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3257, 3258, 3562, 3730쪽), ⑧ 피고인들 및 전직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공소외 13도 검찰에서 강원도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사업은 별도의 구분된 보조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 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십천의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사업인 '오십천의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6)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

- 중앙관서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
- 기 수행된 보조사업은 변경 불가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천재지변 등 제한적 조건 하에서 가능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등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소 가능
- 기 수행된 보조사업은 취소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주요시설 등을 사용·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시행령 제9조①)
- (간접)보조사업 경비 중 (간접)보조금 및 (간접)보조사업자 부담 경비 외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시행령 제9조②)

- ▶ (취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발생 경비 및 배상금 보전
 - 교부 결정 취소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경비를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
 - 보조사업 관련 임시건물, 기계·기구 철거 및 남은 업무 처리 경비(시행령 제10조 제1호)
 -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 해제로 인한 배상금(시행령 제10조제2호)
- ▶ 기재부장관의 협의, 신청자 통지,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
 - 변경·취소 관련 중요 사항은 기재부장관과 협의, 그 외 사항은 통보
 - 변경·취소 결정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제19조①)
 - 변경·취소 후 수정 교부시 영세 보조금 통합 교부(제20조)

제21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일어난 사정의 변경으로 교부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 변경의 예로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신청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 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민법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의 요건에 관한 해석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축적된 원칙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에서 말하는 사정변경은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과 해석 및 행정법관계 이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보조금 교부 결정은 행정청이 보조금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공권력에 기초한 일방적 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조의 규정 사항 가운데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의 절차, 효력에 관한 해석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행정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가) 사정변경

(1)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민법」 법률에 직접 규정된 원칙은 아니지만²⁹⁾ 「민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해석에서 파생되는 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널리 인정되면 계약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에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다가, 2007년에 내린 판결에서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당사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³⁰⁾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사정이 일방 당사자의 사정이 아니라 는 점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³¹⁾

(2) 행정법상 사정변경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하나의 법원칙으로 설명하지는

29) 「민법」은 '치료증감청구권'(제286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제661조)를 사정변경의 원칙이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14, 47면.

3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3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않는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행정법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이해할 뿐이다.³²⁾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사정변경의 법리가 독자적으로 정립될 필요성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즉 보조금 교부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행정이 민간 보조사업자와 같은 사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사정변경을 근거로 계약 이행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³³⁾

한편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에서는 ‘사정변경’을 국가가 관여하는 절차나 권한의 조건들 중 하나로 규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예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서 규정한 ‘사정변경’이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다. 2005년 개정 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권자인 해수부장관이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등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유수면매립법」³⁴⁾ 제32조 (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등을 취소·변경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 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2.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2) 예컨대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제13판, 2016, 40면.

33) 이에 대해서는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년 4월, 147면~169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4) 구 공유수면매립법(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 근거해서 사정변경이 주장된 사건³⁵⁾에서 대법원은 이 법의 사정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즉 처분 당시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취소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교부 결정 변경·취소

변경과 취소하는 대상은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 교부의 원인이 된 보조사업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부 취소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변경을 넓게 보면 일부 취소나 전부 취소도 교부 결정 자체를 변경한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본 조는 교부금 교부 결정의 변경과 취소를 구분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취소 결정에 따라 미지급되는 보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하면서 변경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조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조에서 말하는 변경은 교부되는 보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에 포함된 보조사업의 내용에 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변경·취소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차례로 살펴본다.

(1) 변경·취소의 요건

(가) 변경의 요건

보조금 교부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

35)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그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 농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정변경,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정변경, 수질관리상의 사정변경,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이 위 개발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아직 수행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달리 변경은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필요성에 대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교부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으로 들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천재지변 등'을 예로 들어 변경의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 대법원은 사적 계약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계약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³⁶⁾

다만 민법에서 내용통제원리는 계약 내용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에 해석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에 의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관을 이용한 계약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법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권자의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조금법의 목적, 즉 공적 재원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공법 관계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새로운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같다고 본 판례가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³⁷⁾

행정법학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과 같은 행정행위의 변경에 대해 본래의 결정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변경하는 실질적 변경은 “중전 처분은 변경처분에 의해 대체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³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보조금 교부 결정과 같은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전의 결정은 후에 내려진 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보조금 교부 결정권자의 변경 권한에 대해 더 자세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

3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38) 박균성, 행정법강의, 앞의 책, 325면.

지 않더라도 이 권한 행사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변경 권한 행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 즉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취소의 요건

「보조금법」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결정의 변경보다 더 엄격한 요건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신청한 신청자에게는 비록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아예 받지 못하는 취소보다는 변경이 낫다고 짐작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확정되고 이를 통해, 법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관점에서 변경보다는 법적 행위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취소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교부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법률행위 취소에 해당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본 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2) 변경·취소의 절차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만으로 족하다. 협의할 때에는 ‘변경·취소의 사유’,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어떤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려면 먼저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과 취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보조금 신청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경·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처분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기한과 그 대상 기관을 특정하여 변경·취소 처분 전에 미리 해당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③」 보조사업자는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상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접수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모두 거친 후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보조금법〕 제19조① 통지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3조①, 그 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6조)

(3) 변경·취소의 효과

민법에서는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는데, 민법상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³⁹⁾인 반면 철회는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를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예컨대 청약의 철회) 또는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행위(예컨대 제7조, 제16조, 제134조, 제1108조, 제1110조)⁴⁰⁾를 의미한다.

행정법에서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구분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⁴¹⁾”를 말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⁴²⁾”를 의미한다.

본 조에서는 비록 교부 결정의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는 개념에 따르면 본 조의 취소는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

39) 송덕수, 민법총칙, 제4판, 박영사, 2018, 405-406면.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40)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406면.

4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제12판, 2018, 288면.

42) 정하중, 행정법개론, 앞의 책, 297면.

법원⁴³⁾도 “[...] 보조금 교부결정을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위로서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하고 [...]”로 판시한 바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 취소로 인해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법률에서는 취소로 인해 필요해진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설비 철거나 남은 업무 정리에 드는 경비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배상금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경비와 배상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비와 배상금은 본 규정이 없다면 보조사업의 취소를 당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운용하는 보조금 예산에서 지출하여 보조사업자가 경비 및 배상금에 충당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43) 서울행정법원 2005.12.30.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



보조사업비의 이월: 민간보조금의 이월

- ▶ **현황** : 민간이 자본보조금으로 사업으로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특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
- ▶ **질의** : 이 경우 아직 지금 교부전이라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올해 보조금 편성된 사업이므로 보조금을 올해 교부하고 정산을 다음해 상반기에 받는 것이 맞는지 여부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연내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참조)
- ▶ 보조사업 집행 시 이월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를 참고하시어 해당사업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

보조사업비의 이월: 사업 종료 후 인증 심사료 지출 가능 여부

- ▶ **현황** : 사업내용 중 규격 인증 사항이 있어 인증을 심사 중에 있으나 최종 인증서가 나오는 시기는 사업 종료 후 인증 심사료가 지출되어야 하는 바,
- ▶ **질의** : 보조금 사업기간 종료 후 인증 심사료에 한하여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및 보조금 이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의 이월)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②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③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이월이 가능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4조 참조).

- ▶ 다만, 이월이 가능한 경우라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출하신 사항이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1)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 (보조금의 용도) 보조사업자는 성실 수행 의무를 지며,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 성실 수행은 ①법령, ②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 (간접보조금의 용도) 간접보조사업자는 수행 의무를 지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간접보조사업 수행은 ①법령, ②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 (초과액을 유사목적 사업에 사용) 지지체 장은 보조사업 절감예산(초과액)을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단, ①보조사업 원래 목적 달성했고, ②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신규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시행령 별표2)에는 사용 불가

가) 용도 외 사용 금지의 의의

「보조금법」의 전체 체계 내에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고(제30조) 이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제31조의2) 또한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제33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제41조)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의 수행’(제4장)에 관하여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첫 번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자의 원칙이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수행 원칙에 이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대신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직접 교부 결정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수행의 원칙으로 지켜야 할 기준으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

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열거하면서 ‘또는’으로 규정한 것은 이들 기준들에 대해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보조금법」이 “용도 외 사용 금지”라는 제목 하에 수행의 원칙과 금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즉, 원칙에 따른 수행과 용도 내 사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이 별개인지 문제이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이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된다. 반면 다른 것으로 보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나) 성실 수행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우리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주의)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주의)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선관주의’ 또는 ‘선관주의의무’라고 표현하기

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⁴⁴⁾ 민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이 선관주의의무를 말한다.⁴⁵⁾ 즉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라는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으로 응당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민법에서 선관의무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본 조에서는 선관의무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법령’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보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기울여야 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법령’ 등 보조금 교부 결정을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가 선관주의의무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과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대신 ‘교부 목적’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은 「보조금법」을 비롯한 법령과 법령에 근거한 공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아래 제23조)

4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14, 880면.

45)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19면.

46)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정형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유책한 행위에 대한 응징이 문제되는 형법에서와 달리 민법에서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문제되기 때문에, 또한 민법은 추상적 「人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기준이 정당화 된다(법적 거래는 채무자의 개인적 급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는 자기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가령 일정한 수술을 의학의 법칙에 따라 행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외과의사가 수술기술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록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여 수술하였다더라도, 그는 민법상 과실로 행동한 것으로 된다.”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20면.

그런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 곧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 보조금의 용도

위와 같이 수행의 원칙과 용도 외 사용 금지를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 규범으로 이해하더라도 법령, 교부 결정이 내용 및 처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보조금의 용도에 맞는 사용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적법한 수행을 기준이 되는 법령 등 기준의 의미를 살펴본다.

(1) 법령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법령’에는 「보조금법」과 이 법률의 시행령을 비롯해서 보조금에 직접 관련되는 법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보조금법」 제41조에서 형벌 제재의 대상을 정하면서 제22조를 위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조에서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목적’을 보조사업 수행시 따라야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지는 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을 비단 「보조금법」을 비롯한 직접 관련 법령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법령’을 모든 법령으로 볼 경우, 제41조에서 규정한 형벌 제재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 수행 의무와 용도 외 사용 금지로 구분해서 해석하면 해결될 수 있다.

즉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적법한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제41조에서 규정한 형벌 제재는 적법한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더하여 ‘용도 외 사용’에 이르렀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과도한 형벌 제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본 조에서 규정한 수행의 원칙과 금지를 각각 다른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적법하고 성실하게 보조금을 집

행하는가의 문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금지를 위반하였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대해 「보조금법」이 강한 형벌 제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범죄에 이르는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으로 이해하고, 전자는 바람직한 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아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반”은 이와 달리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관련된 법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교부 결정의 내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란 「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 교부의 조건을 포함하여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부 결정의 내용은 「보조금법」 전반에 걸쳐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규범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법」은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교부 결정의 내용’이 보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교부 결정의 내용’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모두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교부 결정의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기준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더라도 보조금의 용도 내의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3)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이란 법령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여기서 ‘처분’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특정 사안에 대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예컨대, 본 조에 따른 수행명령이나 정지 결정도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은 모든 보조사업자에 대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정하는 바와

구분된다. 「보조금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들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수행에 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내용 변경의 기준, 제25조에 따른 수행 상황의 보고의 방법, 제27조에 따른 실적 보고의 방법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지만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 소결

본 조는 보조사업의 수행 방식에 대한 의무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41조에서 본 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행 방식의 기준과 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법률 운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곧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법령’을 보조금 관련 법령이 아니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중에 어떤 법령이라도 위반하면 제41조의 형벌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전부를 지키지 않으면 형벌 제재를 야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22조에서 보조사업 수행 방식에 관한 의무와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금지를 구분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41조의 형벌은 후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업 수행을 적법하게 할 의무는 넓게 규정하되 형벌 제재가 과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더라도 형벌 제재 대상이 확대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중요재산의 교부 목적 외 사용 범위 :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이나 물품이 방치되는 경우

- ▶ **질의** :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건축물 등)이나 물품(가전제품, 농기계 등)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인지 여부
- ▶ 해당 보조금 사업의 교부 목적, 취지, 교부조건, 실적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

소송비용의 집행 가능 여부 : 소송비용 집행 가능 여부

- ▶ **현황** : 국가에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보존관리(민간보조사업) 에서 산재보험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사전예고가 통지되었습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크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당초 산재보험료 예산보다 약 3천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 ▶ **질의** : 보조금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면 기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소송비용은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할지 여부는 해당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 납입 가능 여부 : 건축물의 취득세

- ▶ **현황** : A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에 제공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사가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의 신축비용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권 취득을 위한 취득세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이에 A사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해당 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 취득세 비용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A사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해당 보조금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 위 건물에 관한 취득세 납부가 보조금의 용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 **질의** :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취득한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를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기타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보조금의 교부기관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동 사업의 교부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2016도11103 :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 대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

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춘천)2015노162 : 용도 외 사용의 범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전용한 것은 시비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이므로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과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 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판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은 보조금법상 '보조사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범조인 보조금법 제42조 제1호, 제23조에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창원)2014누11529용도 변경의 승인 시기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은 반드시 사전승인이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사후승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따라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의 이전을 추진하며, 국비지원 의료장비는 의료원, 도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등에 무상양여 후 사용불가 장비는 공개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4. 11. 6.자 진주의료원의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26.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경상남도의 위 활용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조례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이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와 같은 활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보조금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4구합329 : 승인 없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점, ②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을 제16호증)'에도 일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위임하였을 뿐,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까지도 변경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공사 내용에 관한 설계변경 이전에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던 자재변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다른 설계변경에 관하여도 보조금법에 따른 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이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승인사무는 건축법상 허가와는 별개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한 사업변경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자신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에서 정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⑥ 또한 원고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심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류 보관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조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과 피고에게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공보불게재])

2)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업 내용 변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사항
- (사업 경비 배분 변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사항
- (경미한 사업 내용, 경미한 사업 경비 배분) 승인없이 가능(경미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의 내용에 보조사업의 내용과 경비 배분을 포함하게 된다. 이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부 결정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이 '사정 변경'에 의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위 제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본 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도 제21조와 같이 '사정 변경'을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나 변경' 중 보조사업자가 하는 변경, 취소를 규정하여 제21조와 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에서 규정한 권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사정의 변경'은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보조사업자가 당초에 계획하였던 바를 달성하고자 하지 않고 변경하고자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보조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배분'이다. 사업의 내용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 외에는 교부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포함된 사업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도 이와 달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적 재원의 사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집행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 과도한 행정 업무가 효율적인 보조 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그 기준을 정하여 승인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예산 배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다⁴⁷⁾.



관련판례

2016도11103 : 간접보조사업자의 적용 여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47) 다만,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조금 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각 중앙부처의 개별 보조금지침에서도 이를 따로 정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보조사업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통일적으로 이를 규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관서별로 보조금 관련 지침에 어느 정도 통일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춘천)2015노162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경비의 배분 변경에 해당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42조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40조, 제41조와 달리,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 1. 1. 제정 및 시행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세부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세부집행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시·도지사라고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삼척시장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따라서 강원도지사 입

장에서는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 내역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장으로서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업기간 등에 모두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57, 3258쪽), ③ 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보조금을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통합하는 보조금 규모의 기준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 2개의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용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강원도지사도 위 2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3267쪽, 3277쪽), 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별도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3379쪽 이하), ⑥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삼척시가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도 위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⑦ 각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날짜, 공사 착공날짜, 준공 예정날짜, 사업구역이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3257, 3258, 3562, 3730쪽), ⑧ 피고인들 및 전직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공소외 13도 검찰에서 강원도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사업은 별도의 구분된 보조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사업인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4구합329 : 사업 내용의 변경 승인 여부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점, ②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인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을 제16호증)'에도 일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의 설계변경"까지도 변경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공사 내용에 관한 설계변경 이전에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던 자재변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다른 설계변경에 관하여도 보조금법에 따른 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이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의무는 건축법상 허가와는 별개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한 사업변경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자신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에서 정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⑥ 또한 원고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심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류 보관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조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과 피고에게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공보불게재])

3)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부권자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사업 인계 가능

– 인계는 사업 자체는 계획되는 것이며,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것

▶ 교부권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 중단 또는 폐지 가능

– 중단은 잠정적인 사업의 정지, 폐지는 항구적인 정지를 의미

「보조금법」 제22조부터 시작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제4장은 가장 먼저 정상적인 수행에 대해 원칙을 정하고(제22조),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예정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제23조)와 사업 수행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제24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정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사업을 ‘인계’하는 것,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계, 중단, 폐지 모두 본래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⁴⁸⁾. 그러나 인계는 사업 자체는 계속되는 것이고, 중단은 인계 및 폐지와 달리 원래의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잠정적으로 사업 수행을 멈추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지는 보조사업을 대개로 한 보조금 교부권자와 보조사업자와의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보조사업은 신청자와 교부자 양자 간의 의사 또는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48) 중앙관서의 장은 특히 ‘인계’와 관련한 승인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애초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자를 내세워,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다시 그 사업자로부터 인계받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보조금 신청자는 예산 계상의 신청 단계 또는 교부 신청의 단계에서 특정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보조금 교부권자는 그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적 재원을 제공하게 된다. 교부권자는 재원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도 갖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교부권자가 아닌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조금법」은 이러한 관계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제26조) 권한,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28조)를 통한 ‘보조금 반환’(제31조) 명령 권한 및 ‘교부 결정의 취소’(제30조)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법」에 규정된 법률상의 조치 권한들은 역설적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보조금 교부권자가 아닌 보조사업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구조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보조사업자가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강제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주장하는 경우에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주장이 교부권자의 판단과 다른 경우에 공적 재원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교부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가) 보조사업의 인계

「보조금법」에서는 보조사업의 인계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계는 민법, 상법이나 행정법에서 굳어진 뜻을 갖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그런데 ‘인계’는 기존의 보조사업자와 인계받는 새로운 보조사업자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 간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자의 권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하나로 ‘수행 배제’(제31조의2)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재 조치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보조사업이 인계되는 경우에 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1) 법률관계 해석

기존 보조사업자와 중앙관서의 장 간의 관계를 채권채무 관계로 보면, 보조사업의 인계는 채무자의 변동이 된다. 민법에서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변동되는 관계를 경계,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로 나누어 관념하고 있고 각각의 요건과 법률효과가 다르다.

「보조금법」에서는 보조사업 인계에 관해서 본 조 외의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비록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을 거쳐 이루어진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변동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취지와 이렇게 수행자가 바뀌는 것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여 함부로 수행자가 바뀌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공존한다.

(2) 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

「보조금법」 제5장은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어떤 보조사업을 수행하다가 일어난 일을 이유로 해당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향후의 보조사업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보조사업의 인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존 보조사업자에게 ‘수행 배제’가 내려졌거나 내려져야 한다면 보조사업이 이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보조사업자에게 얼마나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나) 보조사업의 중단

현행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의 인계, 폐지와 함께 중단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중단을 폐지와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로 볼 때, 중단은 잠정적인 사업의 정지, 폐지는 항구적인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중단 상태가 계속되어 예정된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적 보고, 회계감사 및 결산 등에 대해 폐지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업기간 종료 전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개 승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때, 보조사업별로 실적이 보고되고 이를 기초로 보조사업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 ‘실적 보고’(제27조)를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1) 중단 후 재개

중단 후 사업기간 중 재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보조사업의 구조상 사업자가 원하더라도 중단에 대한 승인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승인의 효력을 깨는 재개도 중단에 대한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승인권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보조금법」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에 대해 엄격히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보조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의 중단 후 재개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법률 규정만을 엄격히 해석하면 승인을 받아 중단한 후 승인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은 중단 승인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이 엄격한 법률 해석은 전체 법률의 목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면, 절차 자체의 엄격성을 최우선시하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의 형식을 ‘승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개에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재개 후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단과 실적 보고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27조)는 보조사업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금액 확정과 반환 명령이 이 실적 보고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보조금법」은 다음 세 가지 때에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실적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둘째,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셋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이다. 중단 후 재개하여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첫째 조건에 따라 실적 보고를 하면 될 것이다.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제27조의 규정 취지는 보조사업이 진행 결과가 적절한 시점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점이란 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의 사용 결과에 따라 공적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조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기간이 종료하거나 폐지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현황과 중단전까지의 실적을 최대한 빨리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단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말에 해당 사업의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보조사업의 폐지

「보조사업법」은 보조금과 보조사업을 매개로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교부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 관해 ‘사업 실적 보고’(제27조), ‘회계감사’(제27조의2), ‘금액 확정’(제28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직

접 규정한 것은 제27조(사업 실적 보고)이고, 이하의 규정은 이에 이어지는 과정을 규정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의 종료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본 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수행 방식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27조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함께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건으로 사업은 폐지될 수 있고, 사업이 폐지되면 제2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실적 보고 등 사업의 종료 절차를 밟게 된다.



2015두60617 : 사후 승인 가능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5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조금 사업 폐지 또는 중요재산 양도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조례 공포 당시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조례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창원)2014누11529 : 폐지 승인의 방법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은 반드시 사전승인이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사후승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따라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의 이전을 추진하며, 국비지원 의료장비는 의료원, 도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등에 무상양여 후 사용불가 장비는 공개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4. 11. 6.자 진주의료원의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26.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경상남도의 위 활용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조례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이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와 같은 활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보조금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 상황 보고 의무

-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수행 상황 보고

▶ 중앙관서의 장의 현장조사 권한

-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접)보조사업 현장조사

▶ 수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등)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

(간접)보조사업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려는 국가의 목적에 따라 국가에게 주어지는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간접)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지급이나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행 자체도 공적 관리·감독의 대상이 된다. 「보조금법」은 이런 상시적 관리·감독 제도로써 (간접)보조사업의 보고 의무, 현장조사 권한 및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 상황 보고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보조사업자에게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보고를 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해서 ‘또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의 보고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게 된다.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에서는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고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 상황’의 범위, 보고의 절차나 방법,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각 중앙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중앙관서의 장의 현장조사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과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현장조사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현장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조사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등에 대해서 법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조사 권한을 활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조사기본법」⁴⁹⁾은 “행정기관이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행하는 활동”(제2조제1호)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행정조사에 포함된다.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도 「보조금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기본원칙, 절차와 방법 등이 적용된다.⁵⁰⁾

49) 법률 제14184호, 2016.5.29. 개정.

50) 행정조사 제도에 관해서는 최환용,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6-08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다) 수행 관련 자료의 보관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⁵¹⁾에 따르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란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감사원법」 제25조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규정한 조문이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받는 자가 제출할 자료를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증거서류·조서 및 그 밖의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이를 「감사원법」에서는 “계산서 및 증거자료 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보조금법」은 이와 달리, 계산서, 증거서류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감사원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한 감사원규칙으로 「계산증명규칙」⁵²⁾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계산서’는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여기서 ‘증명책임자’란 감사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계산서는 회계사무 집행 서류를 말하며, ‘증거서류’는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뜻한다. 또한 ‘첨부서류’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른 보관 필요 서류는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의 용어로 표현하면 “계산서와 계산서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이 두 서류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가 된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최장 5년 이고, 5년 이내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51) 대통령령 제28011호, 2017.5.8. 개정.

52) 감사원규칙 제289호, 2016.6.30. 개정.



관련판례

2014구합329 :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미제출 사유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점, ②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인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을 제16호증)'에도 일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까지도 변경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로서는 공사 내용에 관한 설계변경 이전에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던 자재변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다른 설계변경에 관하여도 보조금법에 따른 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이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승인업무는 건축법상 허가와는 별개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보조금법에서 정한 사업변경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자신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에서 정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⑥ 또한 원고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심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류 보관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조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 등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과 피고에게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변경에 있어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터파기 공사, 절개지 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을 뿐 달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 당시 예정된 원고의 자부담 규모보다 실제로 집행 후 원고가 부담하게 된 자부담 내용이 대폭 늘어난 점, ③ 원고가 원래 계획했던 이 사건 사업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 등 보조금법외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④ 원래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계기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점, ⑤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그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가 달리 이를 거부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가 사업수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고의로 서류를 파기하였다는 등

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중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변경과 관련된 부분(토공, 절개지, 우수시설, 포장) 전부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부분(토공, 조경, 보형) 전부를 취소한 것은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공보불게재])

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수행명령 권한

-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음

▶ 수행명령 위반 시 일시 정지 권한

-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사업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조금법」에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행을 정지시키는 권한은 보조사업자에게 수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기본적으로 「보조금법」은 민간의

창의와 공공의 재원을 접목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수행하지 못하지만 공익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은 국가가 지급 결정 권한을 통해 결정하지만 수행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수행되어 공적 재원이 낭비되거나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보조사업 수행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가) 수행명령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에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⁵³⁾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보조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은 「보조금법」 전반에서 보조사업 수행에서 적용되는 규범처럼 규정되어 있다. 이 수행명령의 조건 외에도 보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제22조), 사업실적의 적합성 판단 기준(제28조)과 시정명령(제29조) 및 교부 결정의 취소(제30조)와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1조의2)에도 기준과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수행정지 처분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서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린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사업 수행을 강제하려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조차 위반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법률

53) 각각의 의미에 관해서는 위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서 서술하였다.

에서는 이 정지 처분의 조건과 정지 처분은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의2(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에서 수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일시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조사업자가 해야 하는 적합한 조치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따르는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제19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조건은 교부 결정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행명령의 조건에서 규정한 교부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직접 제재로써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0조의2 두 번째 문장에서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부 결정의 취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알리게 하여 정당한 사업 수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시행령에서 “취소한다는 뜻”을 보조사업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사업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보조사업자가 교부 결정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보조금법」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6)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합관리망 구축)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구축

-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조치
- (예외)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통합관리망 외 업무 수행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정보) 보조금관리정보

-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중복·부정 수급 방지 조치 의무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0까지 아홉 조문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규정들이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중복 지급되거나 부정하게 수급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구축하는 통합관리망을 말한다. 이 관리망이 구축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제26조의2이지만, 이 조문은 통합관리망 구축뿐 아니라 중복 수급·부정 수급 방지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방지 의무를 지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으로써, 이들은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 가운데 법률에서 필요적으로 명시한 조치가 첫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⁵⁴⁾」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이다. 이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보조사업 선정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5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5호, 2017.12.29. 개정.

이 지침 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과 제8장은 각각 「보조금법」의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통합관리망 사용 원칙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체로써 중앙관서의 장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과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체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도 포함된다. 즉, 보조금의 교부와 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모두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간접)보조사업으로서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간접)보조사업에만 인정된다.

다)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본 조 제3항은 통합관리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4호와 제5호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호에 따라 통합관리망에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성과보고서는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한 성과보고서를 뜻한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한 보고서이다.

제5호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도 통합관리망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절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조문을 두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제54조) 여기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이 통합관리망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사업 대상자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선정과정 등의 정보 공개 범위

- ▶ **질의1** :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대상자의 정보공개 범위
 - ▶ **질의2** : 보조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군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 법률 유무
-
- ▶ 국가보조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하단의 「운영사이트 바로가기」 → 「열린재정」 → 「국고보조금」 사이트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업명, 단체(개인), 지원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일정한 규모(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보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60조⁵⁵⁾, 제60조의2⁵⁶⁾, 시행령 제68조⁵⁷⁾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55)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법령에 근거한 정보 외에 개인의 구체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56) 지방재정법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5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7)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처리 권한

- 법률에서 열거한 정보를 통합정보망을 통하여 처리할 권한 근거
- 특정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 권한 규정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의 자료·정보 보유·이용 권한

-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목적으로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자료·정보 보유·이용 가능

가) 수집·처리 대상 자료·정보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와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관리망을 통해 특정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처리'를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2호). 즉 본 조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처리를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보조금법」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 또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조금법」에서 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적법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과 ‘법령’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6조의3 제1항에서 직접 열거한 자료와 정보는 설명 개인정보를 포함하더라도 법률에서 직접 처리 권한을 규정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서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다. 「보조금법」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별표4에서 34 가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6호 가목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6조의3 제1항제8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8호 관련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종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정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시행령 별표4의 제35호에서는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정할 권한을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자료·정보 제공 주체: 관계 기관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 장은 위와 같은 자료·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제1조). 한편 제2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 장이 위 정보들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요청을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관계 기관의 장이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조금법」은 통합관리망에 수집·처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신용정보의 제공 의무를 지는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의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복·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조에서 말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보조금 관련 정책 목적을 위해 자료·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주체를 의미한다. 동시에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 장이 갖는 권한의 대상 범위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 통합관리망 총괄 권한에 관해서 규정한 제26조의7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료·정보를 요청하는 대상이 된다. 제공으로 요청하여 통합관리망에 수집되고, 처리되는 정보가 보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 “관계 기관의 장” 개념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기준은 법률에서 요청, 제공하도록 자료·정보를 열거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각의 자료·정보에 대해 이를 1차적으로 생성하거나 보유할 법령상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금융·신용정보 요청 권한

-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보 명의인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자격관리, (간접)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

▶ 금융기관등의 장의 정보 제공 의무

-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절차는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보 명의인의 동의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금법」에서 금융·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해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금융정보와 신용정보에 관한 일반법에 대해 특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있고,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있다.

가) 금융정보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 금융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된다.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금융실명법」 제9조),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비밀보장 원칙을 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 여기서 ‘금융회사등’이란 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채권등록기관, 보증기금, 보증재단 등 사실상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일체의 주체를 일컫는다(「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에서는 ‘거래정보등’이라고 표현한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경우, 금융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보조금법」 제26조의4에서는 금융정보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일체의 주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금융실명법」이 적용된다.

나) 신용정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할 권한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신용정보법」 제3조의2). 따라서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

정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신용정보법」과 다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3조의2).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신용정보’라는 용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매우 자세하게 신용정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가 포함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보조금법」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제2항은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이용·제공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7호). 이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미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한편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서 정보 제공자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2조). ‘신용조회업’이란 신용조회업무와 본인인증, 신용평가모형 개발·판매 업무 등을 하는 신용정보업의 일종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제1호).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제3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종합기관과 개별기관으로 나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법령상 업무를 수행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의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이 해당된다.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받는 자가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32조제3항). 이 확인의무에는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공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다. 「보조금법」 제26조의4에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조금법」 제26조의4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등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는 “금융기관등의 장”이다.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등’이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보조금법」 제26조의4제1항).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란 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채권등록기관, 보증기금, 보증재단 등 사실상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일체의 주체를 일컫는다(「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제6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제3항).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종합기관과 개별기관으로 나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법령상 업무를 수행한다(「신용정보법」 제25조의2).

라) 요청 및 제공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동시에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는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고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이 제정되어 있다. 「보조금법」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로 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법」에 따른 금융·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은 보조금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도에 행정권을 인정하는 것과 정보주체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공법 영역과 사법 영역의 구별이라는 원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의 원리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사인으로서 정보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제공 의무가 규정되는 것이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법」 제26조의4 제1항의 입법취지는 「보조금법」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금융·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 법 제32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두 경우 모두에 「보조금법」 제26조의4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이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된다.

「보조금법」 제26조의4 제5항에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두 경우에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마) 소결

보조금은 기업의 전체 예산 중 일부만을 담당한다. 또 보조금은 용도와 사용례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제27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이 보조금을 유용할 확률이 적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조항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기업의

전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다정보 노출로 인하여 보조금 신청 감소하여 보조금사업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⁵⁸⁾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8) 대통령령 제28011호, 2017.5.8.,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⁵⁹⁾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59) 법률 제14242호, 2016.5.29., 개정.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지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⁶⁰⁾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60) 법률 제14823호, 2017.4.18., 개정.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9)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관리정보 파기 의무

-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함
- 중복·부정 수급 방지 필요 자료·정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보유(아래 ①~⑦)

- ①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정보
- ②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0조)
- ③ (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관련 자료·정보(법 제31조의2)
- ④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3조)
- ⑤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정보(법 제33조의2)
- ⑥ 중요재산 처분 제한 관련 자료·정보(법 제35조)
- ⑦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관련 자료·정보(법 제36조의2)

▶ (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 개인정보 폐기 의무

- 보조사업자등의 개인정보(제26조의3제1항각호)를 수집한 자의 폐기할 의무
-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상 보존 근거가 있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목적 달성 이후에도 폐기할 의무 없음

가) 보조금관리정보 파기 의무

보조금법은 보조금관리정보의 보호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의 파기 및 폐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이다. ‘보조금관리정보’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수집되고 통합관리망을 통해 유통되는 다음 정보를 말한다.(「보조금법」 제26조의2제3항)

1. (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 선정·자격확인 등 (간접)보조금 수급자격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간접)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간접)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간접)보조금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간접)보조금과 통합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5.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국가재정법」 제54조)
6.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보조금법」 제15조)
7.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8.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호)

이상의 정보를 보유한 자는 이 정보를 원칙적으로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관리정보의 보유와 파기에 대해 5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5년 동안은 보유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즉시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칙을 규정한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취지는 보조금관리정보를 관리 목적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조금관리정보의 보유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무 자체에도 필요하지만 그 사무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보조금법」은 보

조금관리정보의 보유 필요성과 파기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보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정보’는 통합관리망에 포함된다.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이다.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특정 보조금관리정보에 관하여 정보를 보유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파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즉, 파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합관리망의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합관리망의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파기 의무에 대한 예외 또한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관리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료·정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보조금관리정보’는 통합관리망에 포함되는데, 통합관리망은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정보는 개념상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하는 정보이다. 파기 의무가 발생하는 보유 기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을 별도 규정한 것은 5년의 보유 기간이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시행령⁶¹⁾에서 보유 기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 또는 정보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정보를 포함해서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관리 사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중복·부정 수급 방지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61) 대통령령 제28011호, 2017.5.8., 개정.

- 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정보
- ②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0조)
- ③(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관련 자료·정보
(법 제31조의2)
- ④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정보(법 제33조)
- ⑤제재부기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정보(법 제33조의2)
- ⑥중요재산 처분 제한 관련 자료·정보(법 제35조)
- ⑦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관련 자료·정보(법 제36조의2)

자료나 정보의 '파기'에 대해, 「보조금법」에서는 파기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는 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4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나)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 폐기 의무

「보조금법」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이하,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는 이를 수집한 자가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이다. 보조금수급자 개인정보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하는 정보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뿐 아니라, 「보조

금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34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한 주체가 목적 달성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 폐기 의무의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이로 인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당한 권력적 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개인정보가 수집을 정당화하는 공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즉시 폐기되도록 한 것은 정보 주체의 관점에서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수급자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정보 관련 금지행위

-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 대상)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 방해 목적 보조금관리정보 위조·변경·훼손
-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대상) ①업무상 취득 보조금관리정보 목적 외 사용, 제공·누설, ②보조금통합관리망 위조·변경 또는 훼손, ③월권적 보조금관리정보 처리

▶ 기획재정부장관의 적법한 보조금관리정보 사용

- 보조금 집행·관리 목적 범위 내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제공·누설 금지
- (목적 외 용도 제공 예외적 인정 사유) ①정보주체 별도 동의, ②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 영장에 의한 요구, ③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예외적 목적 외 용도 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요건

- 목적 외 용도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보조금법」은 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정보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에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관리정보'란 (간접)보조사업과 보조금수령자의 수급자격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 (간접)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제26의2제3항). 이 정보에 대해 「보조금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여 형사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조금 관리 행정의 책임 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 필요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가) 보조금관리 정보 관련 금지행위

「보조금법」은 제7장에서 형벌적 제재를 포함하여, 「보조금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벌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강한 벌칙을 규정한 조문인 제4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관리정보 관련 금지행위가 해당된다. 즉,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1항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형벌적 제재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정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요성이 큰 만큼 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도 「보조금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및 책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범위 내 사용 의무와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누설되지 않게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1)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목적 내 사용 의무

첫 번째 의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정보를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때 목적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이 목적은 ‘보조금관리정보’의 개념에 따라서도 도출되는 정보의 수집 목적보다 넓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조금관리정보’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되는 정보이고(제26조의2제3항),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것이다.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라는 목적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라는 목적을 서로 비교해 보면, 후자가 넓은 개념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정한 목적 내 사용 의무에서 말하는 목적은 보조금관리정보 자체의 수집 및 처리 목적보다 넓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2) 목적 외 타인 제공 방지 의무

두 번째 의무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도 전단에서 말한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목적”과 같이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제2항 후단의 해석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제2항 후단에서는 보조금관리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위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목적 외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런 제공이 나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게 된다. 여기서 ‘목적’이 “중복·부정 수급 방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 제공의 정당한 목적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본 조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를 규정한 조문이다. 보조금관리정보는 보조금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정보의 가치가 높은 만큼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게 된다. 본 조에 앞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하여 권한을 규정한 조문들과의 관계에서 본 조문은 정보의 ‘보호’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 제공 목적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제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목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2항 후단에서는 단순히 “목적 외의 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용 의무를 제한하는 범위와 타인 제공을 제한하는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자 한 「보조금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통한 목적 외 이용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받은 타인이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호의 예외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정보주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보조금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조금법」은 여기서 말하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의’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 정보가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예외사유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도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가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 외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민사상 “증거제출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⁶²⁾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증거의 수집으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증인, 감정, 검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서증으로, 우리의 서증신청 종류⁶³⁾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그 중 문서소지자에게 강제로 문서를

62)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물에 대한 “제출명령”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관련하여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물수 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 압수 대상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해당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판의 증거물이거나 물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63) 첫째, 신청인이 직접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343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한 것으로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라면 법 제343조, 제345조에 따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라면 법 제352조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상기 문서송부촉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따라 소재지서증조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최광선,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기업연구 7(2), 2017, p.154-155 참고.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문서제출명령 제도⁶⁴⁾인데, 민사소송법상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서증신청을 함에 있어 법원에 그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집행하는 것이 문서제출명령 제도이다. 이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 징, 쟁점 및 증거의 사전 정리 등 집중심리주의를 실현하는 방편이 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도 보조금관리정보는 이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는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위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제114조 1항은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영장발부의 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압수물은 제218조의2에 의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며, 그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또는 방해한 경우의 제재가 다소 미약하고,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제출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송부촉탁이나 소재지서증조사신청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론상·실무상으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4) 보호조치 수립·시행 의무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6조의6제4항), ‘보조금관리정보’에는 (간접)보조사업자뿐 아니라 보조금수령자에 관하여 수급 자격이나 수급 이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관리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보조금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 「보조금법 시행령」은 이 위임에 따라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관리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보조금법 시행령」 제20조의4⁶⁵). 「보조금법」은 보조금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설정된 정보에 관한 권한에 상응하도록 정보에 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1)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

65)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법 제26조의2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위탁(寄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위탁 방법, 위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관리망 총괄 권한**
 - 관리 업무(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총괄
- ▶ **기획재정부장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권한**
 -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개인정보(제26조의3①) 및 자료 요청 권한
 - 중복·부정 수급 방지 목적 범위 내 요청 및 처리
- ▶ **기획재정부장관의 금융·신용정보 수집 권한**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권한 및 관계 기관의 장의 의무(제26조의4 준용)
- ▶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 업무를 법정 위탁**
 - (업무) 통합관리망의 운영(유지·개선 등), 보조금 집행·관리 자료·정보(제26조의3)의 처리,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 대국민 포털(제39조의3제1항)의 관리에 관한 업무

- (예탁 보조금 지급)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한 국재정보원(財源院)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음

가) 통합관리망 관리 업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의2). 통합관리망의 구축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에서는 통합관리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원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에 관한 업무에는 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자료·정보 요청 권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관리망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래 자료·정보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2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8호에서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4를 통해 규정된 자료·정보는 아래와 같다.

[별표 4]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6호 가목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8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8호 관련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 「공무원연급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종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정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 관계 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관리망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대상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 장이 보조금 집행 업무와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방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의3). 이 규정에서도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가 “관계 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관계 기관의 장”은, 제26조의3에 대한 해설에서 쓴 것과 같이, 요청과 제공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자료·정보에 대해 이를 1차적으로 생성하거나 보유할 법령상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금융·신용정보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 장은 금융정보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의4).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정보가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이 규율 체계에 대하여,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라는 목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 장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제공의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권한을 규정한 본 조는 금융·신용정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위 금융·신용정보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 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적용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제26조의4에 따라 금융·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 장인데, 기획재정부장관도 이 권한을 갖는다. 제26조의4에서 금융·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금융기관등의 장”인 반면, 본 조에서는 금융·신용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제공하는 기관이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하는 자료·정보가 금융정보이거나 신용정보인 경우에는 제26조의4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26조의4에서 금융·신용정보에서 정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합리적 절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하는 통합관리망 운영 등 총괄 기능에 준용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 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12)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통합관리망에 대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 목적으로 다른 법률상 시스템과의 연계 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 범위 확대할 수 있음
- 연계를 통해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가)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을 연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요청할 권한이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요청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 연계를 실행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연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유를 연계 요청받은 주체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른 시스템을 연계시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계의 대상으로 열거된 시스템들은 행정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연계 요청 권한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시스템이 담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시스템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⁶⁶⁾에 의해 설치된 정보시스템이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66) 1996년에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법률 제14839호이다.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제2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제3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제5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제6장)에 관하여 각각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6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37조)과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8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④ <생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⑦ <생략>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 제37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국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이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법률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영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를 통합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2011년에 제정되어 2012년에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제2조 제2호)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2조제1호)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⁶⁷⁾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

67) [시행 2018.4.25.] [법률 제14923호, 2017.10.24., 일부개정].

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히. <생략>

2.~3.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7. <생략>

「보건의료기본법」⁶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6. <삭제>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서비스의 수량이나 금액을 기재하는 증표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8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관리체계를 통합관리망에 연계시킬 수 있다.

68) [시행 2017.8.9.] [법률 제14558호, 2017.2.8., 일부개정].

(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연계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법인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처리, 기록되고 관리된다.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기관과 단체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사

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업무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보육 관련 시스템

(가)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상 전산시스템

기획재정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연계시킬 수 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령상 전산시스템으로는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에 근거한 ‘정보공개시스템’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5조의5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시스템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공시정보’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

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⑥ <생략>

(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업무 시스템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축,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 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시스템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이 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3) 기타 정보화시스템

(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시스템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과 별도로 제96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 재정의 운용상황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등 재정에 관한 현황 정보를 말한다. 이 운용상황에 대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취합한 시군구의 보고 내용과 시도의 현황을 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⁶⁹⁾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69)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지방재정법」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 4.~16. <생략>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나) 교육정보시스템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⁷⁰⁾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접속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위임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⁷¹⁾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뿐 아니라 사용 권한 관리 및 자료의 백업과 보안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연계시킬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하는 정보망으로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정보망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

70)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71)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관련 통합정보전산망을 연계시킬 수 있다. 이 전산망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들 자료 및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한 전산망이다. 여기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을 말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10. <생략>

11.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③~⑤ <생략>

나) 연계를 통한 수집 가능 자료·정보

위와 같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른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관리망에 수집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된다. 이때 자료나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전자를 ‘민감정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예컨대 개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대한 가입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제23조) 후자는 ‘고유식별정보’라고 부르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이 정보에 해당한다. (제24조) 즉,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같은 개인정보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나 정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다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의 범위에 대해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문을 말한다. 심의 주체가 자기의 이름으로 심의 의견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심의 위원회나 협의회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 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권한 행사의 절차적 하자 발생이 가능하다. 본 조문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자료, 정보에 대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의 범위 자체이다. 즉 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른 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 필요성”에 한정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이 범위보다 범위를 넓히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조금법」은 허용하고 있다. 이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본 제26조의8은 제2항 단서에서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의회가 의결의 주체가 되는지, 대외적 행위 주체도 협의회 자체가 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아래 제26조의9에서 규정에 기초하여 협의회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26조의8 제2항 단서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결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3)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 (권한) 통합관리망 운영, 타 시스템 연계,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 (목적) 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계획 심의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의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
- 기획재정부장관 결정 위원: 기획재정부 공무원,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 전문가 10명 내외(3년 임기)
- 중앙관서 장 결정 위원: 통합관리망 이용 중앙관서 및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중앙관서 장이 지명
- 통합관리망 연계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 의장·위원 지정 25인 이내 위원(회의별 위원)

「보조금관리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주도하는 별도의 협의체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통합관리망에서 다량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명칭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이다.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다(제26조의2 제1항). 통합관리망을 사용하는 주체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보조사업자도 포함되지만,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제26조의7 제1항). 그런데 본 협의회가 '운영기관'들의 협의회인

이유는 보조금통합관리망 자체의 운영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협의회는 통합관리망의 운영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한 협의회로, 그 구성은 관계 부처를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심의’ 권한을 갖는 기구이다. ‘심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문을 말한다. 본 협의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크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과 행정정보의 보호, 즉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에서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안전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구성원은 회의마다 협의회 의장이나 위원이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된다.

협의회 구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구성의 조건으로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협의회 규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과 위원을 지명 및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는 동시에 중앙관서의 장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여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별로 25명 이내의 구성원이 의장 및 위원의 지명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위원들 가운데 구성원 지명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

가) 운영기관 협의회의 법적 성격

「보조금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통합관리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망에 대한 다른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망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법률상의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심의’는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문을 말한다. 자문은 행정적 의사결정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말하고, 의사결정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결정주체에게 귀속된다. 이 점에서 자문은 의결과 다르다. 자문은 의결 권한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의결 주체는

자문이나 심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자문은 절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 자문과 심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절차적 의무가 없는 것, 후자는 있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제26조의8 제2항 단서에서는 통합관리망에 대한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회는 의결 기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통합관리망의 관리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한다.(제26조의7 제1항) 여기서 관리란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망 운영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운영에 관한 권한이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통합관리망의 운영 방식의 하나로 법률에서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의사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고 이 결정 권한을 행사할 때 법령에서 정한 협의회의 심의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볼 때 협의회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가 협의회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의 통합관리망 운영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법률은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기재부장관 지명)

2. 독립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기관장 지명)
3. 중앙관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기관장 지명)
4. 자료·정보 제공 공공기관의 장
5. 연계대상 시스템 관리 공공기관의 장
6.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7.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 전문가 10명 내외(기재부장관 위촉)

한편, 협의회의 회의 구성에는 협의회 의장과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항상 포함되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는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각 회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운영기관 협의회의 권한

다음 사항들을 협의회 심의 사항이다. 즉 다음 사항들에 대한 의결권자는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심의 의견을 받아 의결하여야 한다. 첫째, 보조금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조금관리 정보'(제26조의2제3항)와 중앙관서의 장 및 지자체 장이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26조의3제1항)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둘째, 통합관리망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셋째,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계획, 넷째, 통합관리망의 유지 및 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간접)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사업 공시 의무

- 한 회계연도 내 (간접)보조사업 총액 1천만원 이상 사업 대상
-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①교부신청서, ②수입·지출 내역, ③정산보고서, ④감사 지적사항, ⑤기타 시행령 규정 사항을 통합관리망에 공시
- 한 회계연도 수령 (간접)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공시

▶ 공시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권한

- 공시 불이행 또는 거짓 사실 공시 (간접)보조사업자 대상
- 중앙관서의 장이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또는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

「보조금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공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사업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을 공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보조금법」은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명령 권한과 보조금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2 제5항)

법률에서는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정보공시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8호, 2017.12.29., 일부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행 세부기준 제6조는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에 대해 삭감할 수 있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
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
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5)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간접)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 사업 완료 시, 폐지 승인 시, 회계 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간접)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 작성·제출
- ▶ 정산보고서 및 기타 서류 첨부
 - 정산보고서 : 사업 경비의 재원별 사용내역 및 반환액 등 구분 작성
 -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가)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본 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결과 전체에 대한 보고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할 금액이 확정되며(제28조), 보조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제29조)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2조)

나) 보조금의 정산

본 조에 따른 실적보고에는 보조금의 정산보고서가 포함된다.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정산할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고(제28조), 확정된 정산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제31조)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는 최종적인 보조금 수령액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법적 행위가 된다. 정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본 법 시행령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보고서 작성 : 보조금 정산이 확정계약에 적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 : 확정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산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

- 정산의 범위로 볼 때 용역계약 업체와의 총 계약 1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용역업체가 수행하면서 집행한 경비 등을 건건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의 작성주체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용역업체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든지 간에 보조금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업체는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와 용역업체 사이에는 보조금법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이나 민법 등이 적용됩니다.

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 비용

▶ **질의** : 보조금관리법 제27조제2항의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증 비용을 해당사업 보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보조사업자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단순히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급하는 등 중앙관서의 보조금 업무를 대행하여 단순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이외에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보고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 보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반영된 경우 등은 보조금 사용이 가능함⁷²⁾

국고보조금 반납 : 집행 잔액의 반납 비율

- ▶ **현황** : 사업 종료 후 남은 잔여집행금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국고로 8억을 지급받고 자부담금으로 2억을 같은 통장에 넣어두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집행금액은 7억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 ▶ **질 의** : 남은 3억을 모두 반납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와 자부담금 비율 8:2에 따라 2억 4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집행 잔액 반납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를 참고하시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반납은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8:2를 고려하여 집행잔액 3억원 중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2억 4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3항 :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국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련판례

2014노1186 : 허위 보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실적보고를 한 행위가 보조금법 제42조 제4호, 제27조가 정한 거짓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2)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2018년)에 의하면, 회계감사보고서 작성비용은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하에 보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은 정산보고서에서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23,948,700원 상당을 감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 6. 28. ♣♣♣으로부터 23,948,7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재차 ♣♣♣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송금자료를 만들고, 2012. 9. 12.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사업비 284,121,000원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기재한 후 위 송금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볼 것이며,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감면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정에다가 원심 및 상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사업실적보고 행위가 보조금법 이 정한 거짓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즉, 보조금법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위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되 그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결국 보조금법 제42조 제4호, 제27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위와 같은 심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감면받은 사실 또한 위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기존 신청내역대로 모든 공사를 마쳤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고려요소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감면 받은 공사대금의 비율에 상당하는 만큼 당해 보조금을 일부 감액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신청내역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실적보고 행위가 거짓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위 보조금 교부의 취소를 막고자 사업실적을 일부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사업실적을 심사함으로써 보조금 교부결정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정부의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전형적인 거짓보고의 사안과는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일부를 면제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어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으로서 완성한 계사가 전소되는 큰 사고를 입은 상태여서 보조금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공소사실 중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몇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판단인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개제])

16)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특정사업자(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외부감사법」 상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예외)①직전 연도 감사보고서, ②타법상 감사보고서, ③중앙관서의 장 인정

- 2년 이상 계속하여 (간접)보조금 교부받았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타법상 감사 관련 보고서에 보조사업 감사의견 포함하여 제출 가능
- 특성상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이 부적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의무 면제할 수 있음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부적합한 경우의 예시: 특정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법」은 액수가 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다. 본 제도에서는 먼저 더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을 정하고, 여기 해당하는 사업자가 회계감사에 관해 지켜야 하는 의무와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대상

「보조금법」에 따른 회계감사는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적

용된다. 이러한 사업자를 「보조금법」에서는 ‘특정사업자’라고 부른다. 같은 회계연도 중에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준으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러 중앙관서로부터 여러 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함께 교부받는 사업자의 경우에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라고만 규정하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로 한정하지 않은 점과 큰 액수의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러 중앙관서로부터 여러 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별로 10억원 이상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 사업자가 보조금도 교부받고 간접보조금도 교부받는 경우에는 각각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특정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특정사업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논거와 같은 이치로 한 사업자가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모두 특정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회계감사의 방법

‘특정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會計監査)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을 말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취지는 회사 내부의 자체 감사에게만 감사를 맡기 기에는 회사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회계 전문가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⁷³⁾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80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

73) 이철승, 회사법강의, 박영사, 제24판, 2016, 856면.

사에 관한 법률」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법률 제329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상장회사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회사가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등이다. 「외부감사법」의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업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회계감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선임되는 감사와 선임하는 회사 간의 독립성이 제도의 핵심적 특징이 된다.

감사인이 선정에 관하여 「보조금법」은 법률에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특정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는 제5조부터 제10조에서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9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7)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실적 및 교부 결정 등의 심사와 보조금액의 확정

-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실적, 교부 방법 등을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 통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고유사무가 아니며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7조 참조).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보조금법」 제28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8조 제2항).

보조금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급부행정의 특징상 또는 실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적 근거 없이 예산법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보조

금 관계의 형성과 실행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개별적인 사안마다 일반화하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조금의 교부형식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행위는 승인을 통한 행정행위이며, 별도의 보조금법에 의해서 특정한 행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바, 보통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즉 보조금계약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학술상으로는 보조금행정의 행위형식으로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및 2단계형식 등이 거론된다.⁷⁴⁾ 승인을 통해서든 공법상의 계약을 통해서든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조금 관계가 성립하며, 동시에 보조금의 목적, 대상, 종류, 액수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규정 및 부가의무가 정해지거나 합의된다.⁷⁵⁾

가) 계약 이론에 따른 해석 및 적용

만약 보조금 지급행위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즉 보조금계약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 체결 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신청 접수와 법적 성격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조금행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공법상 계약은 보조금을 원하는 공공단체나 사인이 행정청에 보조금의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청은 보조사업자에게 청약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법상

74) 보조금의 성질을 사법계약설, 공법계약설(공법상 증여계약설), 이단계설(행정행위+사법행위설) 그리고 쌍방적 행정행위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한견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보조금행정”, 저스티스 제31권 제2호(통권 제48호), 한국법학원, 1998, 45면 참조).

75)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의 지급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는 그 제3자가 긍정적 요구, 즉 자신이 보조금을 원하는 요구, 그리고 부정적 요구, 즉 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저지하려는 요구를 주장하는 경쟁자일 경우에는 특히 의미가 있다. 경쟁자보호를 위한 법적 형식은 사례별로 행정관청이 선택한 취급양식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행정행위를 택한 경우(승인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용된다. 권리를 침해당한 경쟁자가 자기의 긍정적 권리를 요구할 경우, 즉 자신도 보조금을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의 요구는 그를 수혜자로 하는 행정행위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는 항고소송으로 이어진다. 그와는 달리 경쟁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다른 경쟁사대인 수혜자의 보조금 수급을 저지하는 부정적 요구를 하는 경우, 그의 요구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 즉 해당 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취소청구소송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신뢰보호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 취소청구소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확인 소송으로 다를 수 있다고 한다. Gerhard Flaig, Subventionsrecht, in: Öffentliches Finanzrecht, Franz Klein(Hrsg.), 1993, S.357ff. 참조.

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다.⁷⁶⁾ 그런데 이러한 공법상 계약 체결 과정을 민법상 계약체결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민법상 계약은 청약의 수령을 희망하는 자의 청약의 유인, 이에 대한 상대방(청약자)의 청약, 상대방의 청약에 대한 승낙자의 승낙을 통하여 체결된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원하는 공공단체나 사인이 행정청에 보조금의 신청을 하는 것이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에 이러한 신청이 청약이라면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한 신청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국가의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청은 보조사업자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신청을 바탕으로 한 행정청의 보조사업자에게 청약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승낙을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러한 신청이 청약의 유인이라면 그러한 신청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국가의 행위는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법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계약의 성립

「보조금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는 행위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의 재개나 갱신을 위한 청약의 요소인지, 청약의 유인의 요소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심사 및 현지조사는 청약에 대한 행정청의 승낙 요건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통지는 승낙의 요소로 파악된다. 다만 보조금의 금액이 종전 사업과 다른 금액으로 확정되고 이것이 통지된 경우(이른바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민법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

76) 같은 논문, 47면.

용을 변경하여 하는 응낙에 해당되어 승낙이 될 수 없고 청약은 거절하고(원래의 청약은 실효되고, 따라서 그 청약의 상대방이 생각을 고쳐 원래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수 없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민법 제534조 참조). 이 경우에 원래의 청약자(보조사업자)가 새로운 청약(즉 변경된 승낙)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한편 「보조금법」 제28조 제2항의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금액확정의 통지의 법적 성질도 민법의 이론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법상의 통지행위(Mitteilung)란 특정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실에 관한 관념이나 희망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 법률사실의 분류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용태 중에서도 외부적 용태(행위)이며, 외부적 용태(행위) 중에서도 적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적법행위 중에서도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표현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표현행위 중에서도 어떤 사실(특히 과거 또는 장래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 관념의 통지에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통지행위는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는 통지(교부·송달)와 구별되고, 아무런 법적 효과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예컨대, 당연퇴직의 통보)와도 구별되므로⁷⁷⁾, 민법상의 관념의 통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7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제24판[2016년판], 2016, 385면.

18)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의 시정명령 권한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시정 조치 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권한은 보조사업이 법령과 개별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처분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은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이란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발한 처분을 말한다.

「보조금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에 따른 수행명령과 정지 권한이 보조사업 수행 중에 중앙관서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인 반면, 본 조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은 사업의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본 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적법하고 처분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을 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특정하여 이 조치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1)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

- (보조사업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법령 위반,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절차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취소 결정 내용을(단위사업별· 보조사업자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가) 교부 결정 취소의 의의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다. 「보조금법」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권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 간의 보조금에 대한 취소와 간접보조금에 대한 취소를 구분하여 취소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 모두 (간접)보조사업자의 유책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전자의 관계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데 반해, 후자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과의 관계에서 교부 결정을 내용이나 처분에 의해 직접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가운데 첫 번째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이 취소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의 반환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본 취소의 사유로 규정된 사실은 본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 규정한 벌칙의 구성요건이 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본 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사법절차 주체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교부 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민법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민법상의 일부취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민법 제137조)와 달리 일부취소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

이 일반적 학설의 입장이다.⁷⁸⁾ 이에 따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된다.⁷⁹⁾

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어떤 사안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실제로 해당 사용이 용도 외 사용인 경우에는 취소 결정이 적절한 취소가 되고, 용도 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한 취소가 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 위반이 곧바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용의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교부 결정의 내용에서 모두 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 정해지는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집행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78) 예컨대 송석수, 민법총칙, 앞의 책, 412면.

79)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다) 취소의 범위

본 제30조는 법령 위반 등 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문이다. 그런데 「보조금법」은 이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법의 정도와 취소 범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조금의 특정한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범위 한정하여 취소 권한이 인정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⁸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의: 적용 시기

▶ **질의** :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거나 교부 또는 지급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반환, 정지,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나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0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위 교부결정의 취소를 해야 하는지는 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80)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 ▶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정적인 기간 설정은 어렵지만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고려한 사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참고적으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국가재정법 제96조), 보조금법 제4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정의: 법령의 범위

- ▶ **질의1** : 입목벌채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 및 교부받은 자가 보조사업 실행을 위해 자기 소유 산림에서 입목벌채를 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또는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거나 입목벌채 신고를 하고 벌채하여야 함에도,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벌칙)을 위반한 자기 산림에서 불법으로 입목벌채를 해 국고보조사업을 한 경우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교부 결정 취소 대상인지 여부
- ▶ **질의2** : 입목벌채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 및 교부받은 자가 보조사업 실행을 위해 자기 소유와 다른 산림소유자의 산림에서 입목벌채를 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또는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에 따라 신청(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입목벌채허가를 받거나 입목벌채 신고를 하고 벌채하여야 함에도, 입목벌채에 대해 다른 소유자들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4조(벌칙)을 위반한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입목벌채를 해 국고보조사업을 한 경우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교부 결정 취소대상인지 여부

- ▶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의 ‘법령’에는 보조금법령 및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의미합니다.
- ▶ 다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실제로 취소할지 여부는 보조사업의 목적·내용·진행정도, 법령의 위반의 정도 및 하자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판례

2015두50580: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중합법률정보 판례)

2003두1288 교부 결정의 취소의 판단 기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내용 및 위반하게 된 동기, 보조금 지급사업에서 위반된 부분이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 교부받은 전체 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참조).

2013누1033 납부서의 송달로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에 따른 처분 효력 발생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위 처분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유효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피고가 2012. 3. 16.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하고자 한 처분은 원고에게 교부한 지원금 중 121,444,946원 부분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인바, ①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 송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가 처분서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원고는 이 문

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반환명령 등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납부서는 근거법령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 이유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아(행정절차법 제26조) 처분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가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그 작성 무렵에 송달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처분서 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서는 반환명령 처분의 후행 절차로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적어 발급한 문서이지, 피고가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명령을 할 의사로 작성, 발송한 처분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는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와 일체를 이루어 처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써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납부서의 처분의 내용 및 이유에 관한 기재 불비가 사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될 여지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전통지서에 의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고지 누락은 보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일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달리 피고가 2012. 4. 24.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25.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의 처분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송달 전까지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로 비로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송달로써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4. 25.로부터 90일이 도과되기 전인 2012. 7. 20.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제1심은, 원고가 2012. 4. 13. 피고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12. 4. 24.까지는 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인 위 분할납부 요청시에 원고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2012구합3325: 교부 결정 처분의 존재 여부

피고는 2007. 6. 15.부터 수회에 걸쳐 '추진협의회'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1. 10. 20. 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31조에 기하여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추진협의회' 위원 개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진협의회가 ○○시장 상인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임을 전제로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합원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추진협의회가 ○○시장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공동사업의 경영이란 조합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전 조합원에게 이익이 분배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구청과 추진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사업에 관한 협약 제8조에서 추진협의회가 전체 사업비 중 1억 4,900만 원(2차례 변경협약을 거친 최종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장 전체 상인들이 각출하여 추진협의회에 위 부담금 1억 4,900만 원을 마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우철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추진협의회가 ○○시장 상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아케이드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조합 자체는 행위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추진협의회는 중구청과 이 사건 2차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에스아이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밖에도 감리계약 체결 등 각종 대외적 행위를 자신 명의로 하였고, 더욱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 한 점, ② 중구청도 추진협의회를 상대로 이 사건 2차 사업에 관한 각종 협의, 지도, 통지 등을 하여 거의 모든 공문의 수신자가 추진협의회로 되어 있고, 피고도 수차례 추진협의회에게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점, ③ 피고가 2005. 11. 9. 밝힌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안)은 구청 3인, 각 지구 6인, 아진상가 1인, 일반상가 1인이었고(갑 제5호증의 1), 그 후 상가연합회 회원들 중에서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선정되었으나 상가연합회 회원이 그대로 모두 추진협의회 위원이 된 것은 아닌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시장 상인 전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1, 2차 사업의 각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④ 이 사건 1, 2차 사업은 국비,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시장 상가 일원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시장 상인 전원이 아케이드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2차 사업의 협약서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추진협의회는 이 사건 2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할 뿐이고, 추진협의회나 ○○시장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가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이 아님에도 추진협의회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진협의회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는 추진협회의 단체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구합3325판결 [보조금교부결정일부취소및반환처분취소] [공보불게재])

2)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반환 명령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령
- (기지급 보조금+이자)가 정산 후 확정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제외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의 부정사용이나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보조금법」 제31조). 그리고 이자반환의 근거는 동조를 통하여 인정된다. 「보조금법」 제40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제21조)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제30조)가 있다. 본 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이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경우이든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반환 명령도 함께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먼저 「보조금법」 제30조를 보면 법령 위반 등에 의한 경우에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31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2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의 취소와 철회의 구분에 따르면, 제31조에서는 보조금의 취소를, 그리고 제21조에서는 보조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반환절차

본 조에서 예정하는 보조금 반환의 절차는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을 명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 대상 보조금과 상계할 수 있다.(제32조)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의3) 우리 대법원은 본 조에 따라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을 사법상 채권과 구분되는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청구를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⁸¹⁾한 바 있다⁸²⁾.

(3) 이자의 계산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의 법적 성질이나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민법상의 이자 및 이자채권에 대한 해석론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자채권이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즉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의미한다.⁸³⁾ 따라서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종신정기금(민법 제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제463조)는 이자가 아니다. 또한 지료나 임료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부대채물인 토지 또는 가옥의 사용대가이므로 이자가 아니다. 회사의 이익배당금도 일정한 이율(원본과 이자의 비율)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이윤에 따라 계산되므로, 이자가 아니다.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⁸⁴⁾ 그리고 지연이자율의 약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법 제6조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감액할 수 있다.

한편 이자채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법정이자(예컨대, 민법 제29조 제2항, 제587조 후단, 제748조 제2항 등),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약정이자(예컨대 이자부소비대차)라고 한다.

8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82)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2018년)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취소시 보조금 및 이자반납시기와 관련하여 최소한 교부 취소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물론 반납시기가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역시 반납 대상이 된다).

83)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916면.

84)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18, 84면;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916면;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법정이율은 법률이 정한 이율인데, 민사에 있어서는 연 5푼이고(민법 제379조), 상사에 있어서는 연 6푼이다(상법 제54조). 그리고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이다(공탁법 제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이러한 법정이율은 이자의 산정 외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의 산정에도 쓰인다(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현재에는 연 100분의 15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한편 약정이율은 당사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율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율을 정할 수 있지만, 특별법(예컨대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는 이율이 제한되고 있다. 약정이자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지만 이자약정에서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79조).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지연이자로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민법상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동종 동향에서의 “이자”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정이율은 이자의 산정 외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의 산정에도 쓰이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약정이율에 의할 수도 있으며(민법 제397조 제1항 참조), 「보조금법」상 약정이율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제37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 5푼이 될 것이다.

나) 법적 과제

본 조에 따른 보조금반환청구권은 비록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반환의 명을 받는 상대방의 계약관계의 해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즉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한을 정하여”라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나 구체적인 기한을 동조 동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법」 제31조 제3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정”의 구체적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해석론이나 판례의 축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보조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나 열거 규정 체계를 동조 동항에서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서의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해석론이나 판례의 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 되는지를 해석론이나 실무 참고로 하여 구체적으로 예시 내지 열거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의 범위

- ▶ **질의** : 중앙관서에서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기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점(통장이체)부터 그 보조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발생하는 이자 또한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 만일의 경우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과 같은 중앙관서의 행정처분을 하는 시점(날짜)으로 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 보조금법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 명령이 내려진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보조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합니다.
- ▶ 만일 중앙관서의 장의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하여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의 범위

- ▶ **현황** : 공연사업으로서 심의를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 지원금(민간경상보조)을 교부 시, 대표자 개인에게 전체 금액을 이체하여 팀원에게는 대표자가 개별이체(실수령액만)를 한 후, 그에 대한 팀원들의 원천세는 대표자가 납부한 후 정산보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 **질의** : 각 공연팀마다 인원이 다르고 기여도에 따라 개인분할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납입 후 초기 산출내역과 달리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보조사업자는 당연히 전체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하나,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받는 대상들에게 교부한 금액의 잔액도 다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보조사업자인 민원인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사이의 정산문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 제9조를 참고하시고, 동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을 확인하시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의 범위

- ▶ **질의** :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반납할 잔액이 없어도, 발생이자를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액에 대한 이지만 반납하면 되는지 여부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7(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등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 끝났을 때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합니다.
- ▶ 따라서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된 경우에도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관련판례

2017다242706: 징수우선 순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 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3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2016. 1. 28., 이하 같다) 제7조에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의2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 부칙 제7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

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위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5두50580:

별개 보조사업 간의 지급 전제요건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정규직전환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청년인턴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아닌 프로뱅크가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이고, 피고가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으로서 보조금법령 및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당연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인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또한 ‘청년인턴지원금’의 적법한 수령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 하자가 있음은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의 반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4노1186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심사에 따른 보조금 반환

보조금법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위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되 그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결국 보조금법 제42조 제4호, 제27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위와 같은 심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감면받은 사실 또한 위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기존 신청내역대로 모든 공사를 마쳤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고려요소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감면 받은 공사대금의 비율에 상당하는 만큼 당해 보조금을 일부 감액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신청내역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실적보고 행위가 거짓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

2014구합329: 처분권한의 유무

이 사건 보조금이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점, 보조금법 제2조, 부산시 보조금 조례 제2조, 기장군 보조금조례 제2조가 정한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 부산시보조금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는 지방재정법,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과과의 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결과과의 관계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비 교부권자(부산광역시장)가 반드시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권자 내지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17조)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장군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국고보조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조금법의 규정취지상 보조금 반환명령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에 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사전통지나 원고의 의견에 대한 회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비 보조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에 교부결정의 취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제42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환명령의 전제로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이와 달리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의 전제로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처분권자 역시 보건복지부장관 내지 부산광역시장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음은 위 라.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공보불게재])

2013누1033:

납부서가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위 처분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유효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피고가 2012. 3. 16.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하고자 한 처분은 원고에게 교부한 지원금 중 121,444,946원 부분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인바, ①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 송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가 처분서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원고는 이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반환명령 등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납부서는 근거법령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 이유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6조) 처분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가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그 작성 무렵에 송달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처분서 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서는 반환명령 처분의 후행 절차로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적어 발급한 문서이지, 피고가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을 할 의사로 작성, 발송한 처분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는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와 일체를 이루어 처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써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납부서의 처분의 내용 및 이유에 관한 기재 불비가 사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될 여지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전통지서에 의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고지 누락은 보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일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달리 피고가 2012. 4. 24.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25.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의 처분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송달 전까지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로 비로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송달로써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4. 25.로부터 90일이 도과되기 전인 2012. 7. 20.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제1심은, 원고가 2012. 4. 13. 피고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12. 4. 24.까지는 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인 위 분할납부 요청시에 원고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 배제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 법 제31조의2제1항 및 법 제3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 배제 또는 수급 제한되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의 일환으로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배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 조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보조금을 수령, 수급하는 등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장래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를 해석, 적용할 때 각 호에서 규정한 조건이 중첩하여 발생하였지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본 조의 제재 조치는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제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 규정의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 결정의 취소를 1회 받고,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취소를 2회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비록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에 비해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에서는 제재의 대상으로 '(간접)보조사업자'와 '보조금수령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나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나 구성원에게 미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수행 배제의 기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가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이라는 제목 하에 이른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대상을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한 '자'로 표현하여,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76조 제5항 및

제2항) 또한 참가자격 제한의 내용과 기간을 행위의 유형,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지급 예정 보조금 간 상계

- 보조금 반환 명령 불응 시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상계

▶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 보조금 반환 명령 불응 시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 할 보조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음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과 반환되어야 하는 보조금을 상계(相計)시키는 것이다. 이 조치는 같은 보조사업자가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받아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조사업자에게 또다시 비슷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공적 재원의 합법적, 합리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부 정지 조치는 반환 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반환 명령을 이행하라는 간접적 강제로서의 효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권리로 이해한다면 반환 의무와 서로 상계하는 것을 통해 국가의 공적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제재적 조치가 된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면 본 조는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보조사업자라 할지라도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사업과 다른 종류의 보조사업을 위해 교부 받아야 할 보조금은 교부를 정지할 수 없고, 반환 대상 보조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반환 명령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현행 「보조금법」의 체계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크게 보조사업자에 대한 반환 명령(제31조)과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반환 명령(제33조)으로 구분된다. 본 조에서는 교부의 일시 정지 등의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3조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31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 대한 반환 명령은 다시 “정산에 따른 반환 명령”과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제재 조치로서의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보조금 사용 실적에 기초한 ‘정산’을 토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공적 재원의 합리적 운용” 목적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취소에 따른 반환 조치는 현행 「보조금법」상 제재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30조)와 그렇지 않은 경우(제21조)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정산에 따른 반환 명령

현행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의 수행 결과를 재정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적 재원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는 수익에 대한 반환(제18조제2항)이고, 둘째는 실적보고와 정산에 따른 반환(제31조제2항)이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관한 원칙의 하나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면 국가에 반환”한다는 조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교부 결정에 붙인 조건에 따른 반환은 다른 반환과 달리 반드시 ‘명령’에 따라 반환할 것이

제도적으로 예정된 것은 아니다. 교부 결정에 조건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성립하면 반환할 의무가 보조사업자에게 발생하도록 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 조건에 따른 반환은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집행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적보고와 정산에 따른 반환 제도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정산한 금액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 및 그 이자 사이의 차액은 중앙관서의 장이 반드시 반환을 명령하여야 하고, 이 명령에 따른 반환 의무는 본 제32조에 따른 “일시 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제21조)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제30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한 행위임이 분명한 데 반해, 전자의 취소는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취소를 예정한 것이다. 반면 제30조에 따른 취소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및 처분 위반”, “부정 수급” 등에 따른 취소로서 전형적으로 제재 근거가 되는 취소를 말한다.

부정 수급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 이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교부 결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도 장래에 교부받을 보조금에 대해 일시 정지나 상계를 적용하게 되면 제31조의2의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제재가 필요한 여러 행위 유형에 대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제재 규정이다. 이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교부 결정의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 배제나 교부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취지에 따르면 부정 수급으로 인한 교부 결정 취소 이후에는 해당 취소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향후의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 자격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나 상계 조치는 부정 수급으로 인해 교부 결정

의 취소를 받고 보조금 반환의 명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장래에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반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의2에 따를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보조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과 상계하여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본 조를 운영할 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공적 재원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급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
 -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명령을 하고,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Q&A 보조금 환수 시 근거법령: 국고지원금 환수경위에 따른 법리적 해석

- ▶ **현황** : 2012년도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에서는 전국전문대학으로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출연금)을 통한 링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부훈령 제250조'를 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링크사업 전문대학 중 1개 대학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 일부가 환수되었습니다. 전액환수가 타당함으로 전액환수를 구하는 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답변서를 통하여 교육부훈령 제250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환수경위 설명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훈령 제250조에 근거하여 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훈령 제250조에는 환수를 위한 母法이 존재하지 않아 당시 교육부장관은 환수경위와 절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母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 **질의** : 교육부장관 신고로 인한 환수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모범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해석 결정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여부와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신고포상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법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결정을 하는 것은 하위 훈령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보조금과 관련된 신고포상금의 지급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보조금법 제39조의 2 참조). 따라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2017다242706: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

지식경제부장관(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8. 31.부터 2013. 1. 10.까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고 한다)에게 위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11.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모뉴엘에 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금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은 명백하지만, 그 문언상 일반채권에까지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 제7조가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개정규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규정하에서도 반환금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비로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및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적용 범위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2항 제1호(바)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인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 반환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그 환수결정 역시 위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3누1033 :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의 필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위 처분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유효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먼저 피고가 2012. 3. 16.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하고자 한 처분은 원고에게 교부한 지원금 중 121,444,946원 부분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인바, ①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 송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가 처분서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원고는 이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반환명령 등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납부서는 근거법령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 이유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아(행정절차법 제26조) 처분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가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그 작성 무렵에 송달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처분서 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서는 반환명령 처분의 후행 절차로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적어 발급한 문서이지, 피고가 교부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을 할 의사로 작성, 발송한 처분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는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와 일체를 이루어 처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써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납부서의 처분의 내용 및 이유에 관한 기재 불비가 사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될 여지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전통지서에 의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고지 누락은 보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일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달리 피고가 2012. 4. 24.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25.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의 처분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송달 전까지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

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로 비로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송달로써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4. 25.로부터 90일이 도과되기 전인 2012. 7. 20.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제1심은, 원고가 2012. 4. 13. 피고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12. 4. 24.까지는 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인 위 분할납부 요청시에 원고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중합법률정보 판례)

6)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환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재 대상은 반환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반환 명령(제31조①)
 - 보조금수령자의 환수 대상 행위(제33조① 각 호)
- ▶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반환 명령의 적정성 확인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여야 하고, 금전적 제재 중복 시 제재부가금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 가능하며, 특정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제재부가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 체납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자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범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적용 가능 여부

- ▶ 현황 : 횡령사건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건의 당사자인 (사)△△회 회장이 2016.6.14일자로 구속된 경우
- ▶ 질의 : 횡령사건에 대해 2016.1.28.일 개정되어 2016.4.29.일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법률 제13931호)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부칙 제5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제31조의2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3조의2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질의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위반사실이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범위: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대상

- ▶ 질의 :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면, 국고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면, '횡령한 금액만큼'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 189백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어 '국고 보조금 전액'에 대해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별표 3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의하여 부과될 제재부과금 또는 가산금은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금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의하여 부과할 제재부과금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국고보조금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전액을 대상으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제주)2012누456 :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지원금이 191,000원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행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아동에게 취약 보육의 혜택을 주면서 보육내용의 충실과 아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위배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보육아동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고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징금액 역시 위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 1의2]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연간 총 수입금액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별표 5] <개정 2017. 5.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간접보조사업 자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 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7)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강제징수) 보조사업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 체납 : 국세 체납과 미확정 국고보조금 간의 징수 우선순위

- ▶ **현황** : 고용노동부 국가보조금 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에서 파트너 기관인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의 국세체납에 따른 보조금 전용 통장 가압류로 인해 동 사업 국고 보조금 확정을 위한 정산 반환금 반납 불가상태인 바,
- ▶ **질의** : 보조금법 제33조의3(강제징수) 제2항에 의거, 체납한 국세와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미확정된 국고보조금 중 어떤 금액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여부

-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1호~5호)에서 예외적으로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에서 ‘정산 보조금’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지 않은 이상, 체납된 국세가 국고보조금 반환액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 체납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의 예산 집행

- ▶ **현황**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공사)을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공사수행업체가 국세 체납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공사 업체가 국세체납자이므로 ∞사에서 복지시설에 민간보조금을 집행(교부)하면 그 보조금을 체납된 국세 대신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 ▶ **질의** : 이런 경우 보조금 교부 가능 여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 ▶ 공사수행업체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면 공사수행업체가 국세체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판례

2017다242706 : 반환금의 징수 우선순위

지식경제부장관(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8. 31.부터 2013. 1. 10.까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고 한다)에게 위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11.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모뉴엘에 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금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은 명백하지만, 그 문언상 일반채권에까지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 제7조가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개정규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규정하에서도 반환금이 일

반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비로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및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적용 범위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2항 제1호(비)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인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 반환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그 환수결정 역시 위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6장 보칙

1)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금의 별도 계정 설정 수입·지출 처리 및 실적의 구분

- (간접)보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국비·지방비 내역 및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정의 : 별도 계정의 설정

▶ 질의 : 별도 계정이란?

- ▶ 보조금법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신의 고유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계정과 다른 계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의 :

1보조금당 1세입 계좌 사용의 의무 여부

- ▶ 질의 : 1보조금당 1세입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보조금법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별도 계정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조사업당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중요재산에 대한 공법적 제한

-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중 부동산, 특정 동산(선박, 항공기 등) 및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특히 필요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 제한

▶ 중요재산 현황 보고 및 공시

- 현재액과 증감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시

▶ 중요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필요하며, 행위 제한 위반 시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을 명할 수 있음

가) 중요재산

(1) 주물·종물 개념과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 소정의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의미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중요재산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公示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보조금법」 제35조 소정의 중요재산에 대한 해석은 민법상 주물·종물에 대한 해석론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 주물·종물 개념

주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예컨대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등을 들 수 있다.

민법은 법적인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물을 중심으로 물건에 대한 규율을 하지만 독립한 복수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주물·종물이다. 이와 같이 민법이 주물·종물을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주물·종물 모두 독립된 물건이지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돕는 입장에 있고, 그럼으로써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적 운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결합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물건의 사회경제적 의의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에 따라 민법은 주물·종물이 그 사회경제적 의의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법률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⁸⁵⁾

(나) 종물의 요건

민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종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종물은 주물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는 것(상용(常用)에 공(供)할 것)이어야 한다. 종

85)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3-664면.

물에 해당하려면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⁸⁶⁾ 따라서 일시적으로 효용을 돕거나 또는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⁸⁷⁾ 예컨대 식기, 책상, 난로는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나) 주물에 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⁸⁸⁾

다)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⁸⁹⁾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그 결과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주물·종물이 될 수 있다.⁹⁰⁾

라) 주물·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민법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 주물·종물관계를 인정하면 종물이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주물의 처분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⁹¹⁾ 이러한 관점에서 학설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 제1항을 확장해석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도 주물·종물의 관계를 인정하고자 하지만⁹²⁾, 판례는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고만 한다.⁹³⁾

(다) 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의 처분은 소유권양도·제한물권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매매·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⁹⁴⁾ 이에 따라 종물은 주물과 그

86)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237면;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5면; 지원립, 민법강의, 홍문사, 제15판, 2017, 155면 등.

87)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3750 판결.

88)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47면은 민법 제100조 제1항의 “부속하게 한 때”라는 것을 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89) 따라서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은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고 한다.

90) 예컨대 주택과 단 채로 된 광,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는 주물·종물이 모두 부동산인 경우이다.

91)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38면;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5면.

92) 예컨대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5면.

93)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94)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38면;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6면.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⁹⁵⁾ 이와 관련하여 주물인 부동산에 저장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장권의 효력이 중물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민법 제358조를 근거로 저장권 설정 당시의 중물은 물론이며, 설정 후의 중물에 대해서도 저장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⁹⁶⁾

한편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중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중물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⁹⁷⁾

주물·중물 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결합관계는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 이때 민법 제100조가 유추적용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학설 및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⁹⁸⁾ 따라서 예컨대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⁹⁹⁾이나 지상권¹⁰⁰⁾도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행하여지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며¹⁰¹⁾,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이전한다.¹⁰²⁾

(라) 보조금법의 중요재산

민법상의 주물·중물 이론을 적용하면, 「보조금법」 제35조 소정의 “중요재산”은 주물과 중물을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으므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주물·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해석론은 「보조금법」 제35조나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한 규정 체계와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별적 사안마다 중물이 주물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관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95)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38면.

96)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38면;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6면은 주물의 시효취득과 같이 점유에 기한 권리변동의 경우에는 중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97)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98)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38-239면;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6면;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등.

99)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100)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101)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102)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6면.

나) 처분에 대한 제한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보조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의 사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보조사업에 사용된 중요재산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민법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1) 부당이득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 급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¹⁰³⁾ 이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⁴⁾ 즉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103) 우리민법전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에서도 부당이득법은 독일민법 제2편 제8장 끝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과는 독립된 ‘개별적 채무관계’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는 실제로 부당이득법의 부속품이지만, 역시 위임법에 접속하여 규율되고 있다. 사무관리법, 부당이득법 및 불법행위법은 계약법에 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공통성 이상의 의미는 없기에 그 이상의 통일적인 규범적 또는 해석학적 기초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법의 관계, 또한 한편으로 침해부당이득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 독일민법 제687조 제2항에 의한 준사무관리(Geschäftsanma ß ung)에 대한 불법행위의 관련은 존재한다(河野憲一郎 訳, “ゲルハルト・ヴァーグナー”法定債務關係(1)”, 人文研究 第123輯, 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2012.3, 26頁 참조).

104) 규정형식의 측면에서 독일민법과 우리민법의 차이가 발견된다. 즉 우리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발생의 상세한 과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 비해, 동조에 상응하는 독일민법 제812조 제1항은 급부에 의한 부당이득과 비급부에 의한 부당이득을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박세민,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지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2, 2-3면 참조). 이러한 점을 근거로 최윤석, “부당이득의 체계-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재산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5, 176면은 우리민법은 독일민법보다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당이득조문을 가지므로, 유형론을 설명할 실정법적 근거는 우리민법 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 제도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이러한 부당이득은 법률사실 중 사건¹⁰⁶⁾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득이 생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부당이득에 있어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이득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겼을지라도 당사자의 행위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주어지기 때문이다.¹⁰⁷⁾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의 사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보조사업에 사용된 중요재산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민법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¹⁰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가) 유형론

유형론에 입각한 부당이득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

105) 지원립, 민법강의, 앞의 책, 1595면. 그 밖에 재화의 정당하지 못한 귀속을 시정하기 위한 개별적 제도의 예로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제201조 내지 제203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를 규정하는 제548조 등을 들 수 있다.

106) 박운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346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554면; 노종천, 채권법, 동방문화사, 2015, 607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7, 440면; 윤철홍, 채권각론, 전정2판, 법원사, 2015, 414면; 임한홍, 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칙(5)(편집대표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433면; 지원립, 민법강의, 앞의 책, 1595면 등. 그러나 김상용, 채권각론, 제2판, 화산미디어, 2014, 515면은 비급부부당이득은 사건이나, 급부부당이득은 급부자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타인재산의 중대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107) 송덕수, 채권법각론, 앞의 책, 440면; 노종천, 채권법, 앞의 책, 607면.

108) 부당이득의 본질에 관한 확실인 유형론에 의하면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득·비용부당이득으로 나누는 견해(3유형설)¹⁰⁹⁾와 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구상부당이득으로 나누는 견해(4유형설)¹¹⁰⁾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든 부당이득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기본적인 시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론에 의하면, ① 급부부당이득은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급부가 행하여졌으나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후에 무효가 된 경우에 성립하는 유형으로서, 주로 계약법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¹¹¹⁾ ② 침해부당이득은 주로 반환의무자의 행위(예컨대 소비, 처분, 사용, 첩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반환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성립하는 유형으로, 불법행위법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¹¹²⁾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수 없거나 특히 단순한 사용과 같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자는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여 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¹¹³⁾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즉 주관적인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¹¹⁴⁾ ③ 비용부당이득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예컨대, 수리, 확장, 미화 등)하였으나 비용지출자가 사무관리의 요건(특히 본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의 명백한 불일치가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

109) 예컨대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채권(10), 박영사, 2012, 171면 이하;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1596면은 4유형설이 부당이득의 일유형으로 들고 있는 구상부당이득에 대해서 비용부당이득의 특수한 유형으로 파악하면서 축하다고 한다.

110) 예컨대 김상용, 채권각론, 앞의 책, 517-524면;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채권각론II], 박영사, 2003, 81면 이하.

111)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172-174면. 그리고 계약관계의 청산이 요구되는 실질적인 이유(예컨대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 형식의 흠결,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 위반, 의사표시의 하자 등)는 계약법·법률행위법에서 다루고, 부당이득법은 급부반환 그 자체만을 다루게 된다(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174면). 따라서 급부자가 급부목적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1596면).

112)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243면.

113)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243면. 급부이득의 경우에 반환청구자 스스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목적인 급부를 하였음에 반하여, 이 유형에서는 주로 반환의무자의 행위에 의하여 반환청구자의 권리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1596면).

114) 즉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일정한 배타적 이익이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244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배타적 이익'은 주로 물건에 있어서는 명백하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그 귀속 자체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배타적 이익'이 할당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침해한다고 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는 경우에 성립하는 유형으로, 사무관리법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¹¹⁵⁾ ④ 4유형설에서 부당이득의 일유형으로 거론되는 구상부당이득은 제3자가 채무자를 채권자와의 채권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킨 경우에,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얻은 이득이다.¹¹⁶⁾ 이때에 제3자는 이득을 얻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¹¹⁷⁾

(나) 보조금법상 처분제한과 부당이득

그러나 부당이득은 사법상의 법정채권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 보조금반환청구권이나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 소정의 국가의 반환청구와 그 법적 성질을 달리 한다. 물론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강학적으로 구분된다고는 하지만, 사법상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등의 구제수단의 법적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제수단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5조 소정의 행위들은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 영역에

115)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371면. 이러한 비용이득은 급부자의 의사에 기한 재산상 출연이 존재하는 점에서 급부이득과 같지만, 실재하는 또 실재한다고 오인된 채권관계가 애초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연은 그것을 할 아무런 의무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1596면). 결국 여기서는 항상 이득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얻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득을 일방적으로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익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된 문제가 된다(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372면 참조).

116)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채권각론II), 앞의 책, 196면;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 앞의 책, 371면 이하;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1566면은 구상부당이득을 비용부당이득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상용, 채권각론, 앞의 책, 524면은 구상부당이득의 실질을 급부부당이득으로 이해한다. 김형석, “제3자의 변제, 구상, 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중법공동회교수정년기념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357면은 “구상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제3자 변제의 경우의 급부관계 파악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기인하며, 이 차이는 대가관계에 홉결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행해져야 하는지의 문제에 직면하여 실제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한다.

117)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채권각론II), 앞의 책, 197면 이하; 정기용, “부당이득의 유형적 고찰”, 정책과학논총 제6권, 1990, 92면. 그리고 법률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때라도 제3자에 의한 채무면책행위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한 채무면책행위가 사무관리도 아닌 때에 비로소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김상용, 채권각론, 앞의 책, 524면). 이와 관련하여 윤진수,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2014, 113면은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구상이 인정되는 경우(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 등) 그 근거는 결국 부당이득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만약에 이를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제425조)을 유추한다고 설명 하더라도, 그 유추의 실질적인 근거는 부당이득의 이념이라고 한다.

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한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보조사업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그 요건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¹⁸⁾.

다) 소결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제1호는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용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가 되는지를 알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 내지 국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보조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보호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설이나 관련 판례의 입장을 참고로 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예시 내지 열거하는 규정체계를 취함으로써 보조사업자 등의 동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18) 이와 관련하여 국가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권한 없이 점용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동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서 정하여진 바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1992.4.14. 선고 91다42197 판결). 즉 “위 규정상의 변상금징수권은 국세징수법에 좇아 강제실행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변상금 부과에 법적 성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로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1988.2.23. 선고 87누1046 판결)고 판시하였다.



정의 : 중요재산에 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 ▶ 질의 :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 장비 즉 "동산"인 경우,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 답변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동산인 경우 국고보조금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보의 제공이 되지 않는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재산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중요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의 : 양도의 범위

- ▶ 질의 :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제3항제2호의 양도에 '부동산의 매각'이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통상적으로 법률상의 '양도'라 함은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양도'의 범위에는 매매,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 ▶ 부동산의 매각은 부동산의 매매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는 보조금법 제35조의 '양도'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5두60617 : 중요재산 양도 시 중앙관서의 장의 사후승인 가능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5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조금 사업 폐지 또는 중요재산 양도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조례 공포 당시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조례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창원)2014누11529 : 중요재산 양도 시 중앙관서의 장의 사후승인 가능 여부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

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은 반드시 사전승인이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사후승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따라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의 이전을 추진하며, 국비지원 의료장비는 의료원, 도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등에 무상양여 후 사용불가 장비는 공개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4. 11. 6.자 진주의료원의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26.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경상남도의 위 활용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조례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이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와 같은 활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보조금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5다223350 :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담보 제공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여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거 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4마1631 : 중요재산의 경매처분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여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료

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 (간접) 보조사업자는 부동산(중요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 시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를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예외
 -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
 - (행위 제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중요재산의 행위 제한(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
 - (부기등기 말소)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음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자 등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행위(물권행위) 외에 등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일어나지만, 그 물권을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 결국 부동산등기는 모든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처분을 위한 요건이 된다.¹¹⁹⁾

이러한 부동산등기는 그 의의를 실체법상의 등기와 절차법상의 등기로 나누어서 정의될 수 있다. 즉 전자인 실체법상의 등기란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¹²⁰⁾ 그리고 후자인 절차법상의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기록(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기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¹²¹⁾

119)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제3판, 2017, 72면.

120)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6조),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이 보통의 경우에는 등기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등기의 경정(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이기(부동산등기법 제33조), 등기의 말소(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58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등기의 회복(부동산등기법 제59조) 등의 경우에는 등기가 "등기부의 기록 자체"를 가리킨다.

121) 송덕수, 물권법, 앞의 책, 72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결정은 등기는 신청이 있더라도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대법원 1971.3.24. 자 71마105 결정).

가)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는 그 방법 내지 형식에 따라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주등기란 표시번호란(표제부의 등기의 경우) 또는 순위번호란(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의 경우)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며,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부동산등기의 대부분은 주등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기등기란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등기(이를 부기등기에 대하여 주등기라고 한다)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이러한 부기등기를 두게 된 이유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즉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¹²²⁾ 즉 기존의 어떤 등기와 동일성 또는 그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예컨대, 변경등기나 경정 등기의 경우) 또는 표시될 등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예컨대,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의 이전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한다.¹²³⁾ 이러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는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다.¹²⁴⁾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를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②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④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122) 김황식, 민법주해 IV권, 물권(1) (편집대표 박윤직), 박영사, 2009, 65면.

123) 박윤직, 김재형,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4, 70-71면; 송덕수, 물권법, 앞의 책, 88면. 그러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변경등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긴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순위에서 뒤지는 번호로서 주등기가 행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증액시키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 전에 제3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원래의 등기와 순위를 같이하는 변경등기를 부기 등기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증액된 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는 취지에서 후순위의 변경등기를 주등기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1968.1.13. 선고 67다2558 판결은 제한물권의 양도에 따른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그 등기는 원래의 등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것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한다.

124) 지원림, 민법강의, 앞의 책, 477면.

등기, 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이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환매특약등기, ⑦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⑧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⑨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가 그것이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주등기 및 부기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고 한다.¹²⁵⁾

그런데 대법원은 주등기는 유효하고 부기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즉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¹²⁶⁾

한편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125) 대법원 2000.10.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참고로 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다5016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였다면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26) 대법원 2005.6.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하였다.

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법」은 제35조의2를 통하여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기등기 자체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기등기 일반론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술한 민법의 부속법률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등의 규율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1항의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의미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중요재산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1항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이다. 여기에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1항 소정의 중요재산에 대한 해석은 민법상 주물·종물에 대한 해석론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주물·종물 개념과 부기등기

주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일상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예컨대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등을 들 수 있다.

민법은 법적인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물을 중심으로 물건에 대한 규율을 하지만 독립한 복수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주물·종물이다. 이와 같이 민법이 주물·종물을 하

나의 물건처럼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주물·종물 모두 독립된 물건이지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돕는 입장에 있고, 그럼으로써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적 운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결합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물건의 사회경제적 의의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에 따라 민법은 주물·종물이 그 사회경제적 의의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법률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¹²⁷⁾

(2) 보조금법상 부기등기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1항 이하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전술한 부기등기 일반에 대한 해석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2항 본문은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 및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되는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라는 일반적 해석과 기본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주등기 및 부기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절한 청구가 된다”는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과 주등기는 유효하고 부기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의 예외적 입장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에 따른다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가 주등기만이 원인무효인지 아니면 부기등기도 원인무효인지 여부,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말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

127) 송덕수, 민법총칙, 앞의 책, 663-664면.

대로 주등기만 원인무효의 것이든 주등기 및 부기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든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4항이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주등기에는 유효하지만 부기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해석된다.



부동산 취득 : 소유주체 여부

- ▶ 현황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국고보조사업 진행시 공익사업 토지수용 토지, 손실보상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금외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갔을 경우
- ▶ 질의 :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사업시행자이나 국고보조금을 일부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다면 땅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을 마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이 토지매수 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소유주체 여부는 교부조건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부조건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 취득 시에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것을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 관련 세금 문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동 사업의 교부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제36조(검사)

제36조(검사)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등의 검사 및 질문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및 위반행위, 처분행위 등 공표

- (공표기간 및 대상)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게재기간 연장
- (공표방법)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하고, 공표 대상자의 사명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으며,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공표

▶ ‘보조금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임기)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위원 임기는 3년
- (의결)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해임)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규정(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봄

명단의 공표는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형사적으로 보안처분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공표는 불법 보조금신청행위의 예방과 경고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기간을 정하여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으로 기업의 회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령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공표 적용 시점 : 공표 대상

- ▶ 현황 : 횡령사건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건의 당사자인 (사) △△ 회 회장이 2016.6.14일자로 구속된 경우
 - ▶ 질의 : 2016.1.28.일 개정되어 2016.6.1.일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법률 제13931호)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보조금법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부칙 제10조(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조사업자등이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질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36조의2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6) 제37조(이의신청)

제37조(이의신청)

-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 가능
- (의견청취)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락 의사표시) 이의신청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

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7) 제38조(사무의 위임)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시행령 제17조제1호)
-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시행령 제17조 제2호)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시행령 제17조제3호)
-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시행령 제17조제4호)
-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시행령 제17조제5호)

-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시행령 제17조제6호)
-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또는 재산의 검사 등(시행령 제17조제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교부 여부 결정, 교부 결정 취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금의 반환 처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8)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 (보조금의 회계)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국가재정법 제11조제1항)하고, 예산, 결산 및 기금 사무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국가재정법 제11조제2항)
-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99조)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

-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의 회계와 관련하여,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국가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하며, 예산, 결산 및 기금 사무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거짓·부정사용, 법령 위반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 (보조사업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법 제30조제1항 각 호)
 -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0조제2항 각 호)

- (보조금수령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간접)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33조제1항 각 호)
-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을 명한 금액의 30% 범위, 2억원 이하로 지급
- 동일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지급
- ▶ (예규) 복지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을 두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위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

보조금의 거짓·부정사용,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10)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의 정보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정부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온파일 포털을 구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조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조항이 카르텔 감소에 효력이 있었던 만큼 더욱 장려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편취행위 등에 대한 공동행위자의 경우 최초 자진신고 기업에 대하여 처벌을 감면하는 조항도 고려해볼만 하다.

11)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에게 대해 공무원 의제(擬制)하여 뇌물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근거 규정
 -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루는 업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擬制)'라고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리후부정처사, 사후수리)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 조문의 의의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율로, 이른바 뇌물죄를 일컫는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의 주체 일방이 공무원 혹은 중재인¹²⁸⁾이어야 하며, 직무의 내용 또한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민영화, 민간조달사업 등의 활성화, 정부-민간 합동사업 등이 증가하면서 성격상 공무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가의 보조금 지급 역시 결국 국가가 할 수 없거나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공익적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

128) 여기서의 중재인은 단순히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인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있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조정위원회 위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이 있다.

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사용되는 업무 역시 공무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비록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의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의제’ 조항이다. 공무원 의제조항은 특정한 공무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공무행위를 해태하거나 악용하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보조금법」 제26조의7 제4항에 따르면 ①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②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 ③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④대국민 포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는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공무라 할 것이지만, 한국재정정보원에 속한 임직원들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의 지급 등은 국민의 세금이 운용되는 주요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부당한 이득 취하고 이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보조금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재정정보원에 속한 임직원들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뇌물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1) 뇌물죄의 공통개념

(가) 뇌물

뇌물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한 위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나) 직무관련성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위에서 담당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직무관련성이란 위와 같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의 지위에서 공무로 취급하는 모든 사무이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직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 아니라 관련 직무, 장래에 담당할 직무 등도 직무의 범위에 포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재정정보원에 속한 임직원들은 「보조금법」 제39조의4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일 뿐이므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직무 역시 「보조금법」 제26조의7 제4항에 따른 ①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②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 ③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④대국민 포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에 한정된다.¹²⁹⁾

(다) 대가관계 및 부당한 이익

뇌물은 직무에 관한 보수이기 때문에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는 ①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대가관계로 인해 중회자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대가관계는 뇌물이라는 급부와 그로 인한 반대급부 사이의 견련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익은 재산·비재산 이익, 유형·비유형의 이익을 불문하며, 시기상으로도 반드시 뇌물 제공당시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장래의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정된다. 판례는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이나(대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역시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대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이익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이른바 ‘뇌물죄’)를 범한 사람은 그

129) 여기에 명시된 직무에 속하지 않는 한국재정정보원 소속 임직원의 직무는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형법 제129조 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죄의 기본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수수는 뇌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하며, 요구는 뇌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고, 약속은 양 당사자 간에 뇌물을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공무원이 같은 사람에 대해 순차로 뇌물을 요구·약속·수수한 때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의 청탁이란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수뢰죄와의 차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기 전에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수뢰죄보다 형이 감경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따라서 한국재정정보원에 입사한 뒤 보조급 제26조의7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할 것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를 할 개연성이 있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라면 본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3)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전수뢰죄와 달리 청탁이 '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에는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판결).

또 여기서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자 이외의 사람을 일컫지만(수뢰자의 친족, 스승, 상관 등), 만약 뇌물을 요구하는 자와 실제로 수수하는 자가 공모하여 뇌물 수수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나(이른바 공동정범) 사실상 당사자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된다.(대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4)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사후수뢰죄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앞선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를 범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사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본죄의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이며, 어떠한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뿐 아니라(작위),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부정(부작위) 역시 포함된다.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형법 제129조 제1항),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형법 제131조)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다. 또 부정행위를 한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부정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에서 있었던 사실이 증시되어 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 4. 26. 선고 82도 2095).

유사하게 과거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청탁을 받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후 퇴직한 다음에 수뢰를 한 경우에도 형법 제131조 제3항에 따른 사후수뢰죄에 의해 처벌된다.

(5)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의 알선은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교섭이 성립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특정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 4. 27. 2006도735 판결). 또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족하고, 협동관계·감독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판 2001. 10. 12. 99도5294 판결).

제7장 벌칙

1)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이하 생략]

- ▶ 보조금의 부정한 교부·지급에 대한 형벌(징역 10년, 1억원 이하 벌금) 규정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지급한 자에 대해 처벌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위조·변경·훼손·말소한 자에 대해 처벌

가) 보조금 범죄에 대한 처벌구조

(1) 보조금범죄의 행위태양

「보조금법」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세 개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제40조와 제41조

는 보조금 자체의 교부·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율인 반면, 제42조는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한편 보조금법은 다른 법에서 규정된 처벌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행위가 형법 등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위반(제3조) 등도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지급을 한 경우라면 앞서 살펴본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표〉 행위태양에 따른 처벌조항 적용법조

행위태양	적용법조	비고
보조금 편취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347조(사기)	편취·횡령한 보조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가법 제2조에 의해 가중처벌됨
보조금 부정지급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보조금 허위신청	보조금법 제40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법 제41조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담당공무원의 비리 (뇌물수급 등)	형법 제129조 ~ 제132조 (뇌물죄 일반)	수뢰·증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2호에 의해 가중처벌됨
국고보조사업 관련 특혜 제공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2) 보조금범죄의 주요 사례

(가) 대학보조금 편취사건¹³⁰⁾

대구지역의 한 대학의 총장 및 부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취업률 등을 조작하여 국가보조금을 과다신청·수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입생의 입학지원서류, 복학서류 등이 위·변조 되었다. 이로 인하여 총장을 포함한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4명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농업시설설치 보조금 편취사건¹³¹⁾

충북 제천·단양 지역에서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산약초 식재 및 생산 시설 조성 보조사업 등의 공사비를 부풀려 영농조합 대표들이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130) 김성은,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년, 237면.

131) 같은 논문, 238.

(다) 에너지효율화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사건¹³²⁾

광주지역의 한 보일러업체가 농가를 찾아가 자부담금 없이 친환경 난방기를 설치해주기로 하고, 자부담금 납입에 필요한 돈을 농가에 현금으로 주어 이를 다시 보일러업체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4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후 보일러업체는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자부담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60%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의한 처벌

(1)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의 내용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의 재정적 이익¹³³⁾’이다. 과거 보조금 사무를 규정하였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³⁴⁾」에서는 본 조항의 구성요건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항은 이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즉 허위의 신청이 거짓 신청으로 변경된 것이다.

거짓 신청은 허위의 신청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 변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와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라도 절차를 위반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보조금을 수급받는 경우 역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32) 같은 논문, 같은 면.

133) 이정기,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2017, 412면

134)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법제명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다.

(2) '부정한 방법'의 의미

개정 전 판례는 「보조금법」의 전신인 「구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판례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동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또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다소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보조금을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당한 경우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을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구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제40조의 구성요건이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된 이상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절차상·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거짓신청 혹은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의한 처벌

「형법」은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법」이 형법의 적용배제에 대해 별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죄(이하, ‘부정수급죄’)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1) 판례

(가) 국가보조금 편취 사기죄 성립 가능성 인정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가 비록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국가적 법익인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¹³⁵⁾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기죄의 기수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례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135)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물론 본 판결은 조세포탈사안으로 조세징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배제된다는 결론이었지만, 논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편취행위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출한 사인¹³⁶⁾에서 판례는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 서류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행위(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신고를 한 사인¹³⁷⁾에서 판례는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서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은 보조금에 관해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수급에 대한 하급심의 사기죄 인정례

하급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관리법상의 부정수급보다도 죄질과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7년의 한 판결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였다.¹³⁸⁾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찰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574,44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 문제 되었다. 즉, 사찰관련 단청 보수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인 영천시에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는 관계법령상 공사사업자로서 적격 요건을 갖춘 (주)00산업, (주)00건설과 정부고시 공사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공사금액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고시 공사단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비용

136)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279 판결.

137) 대법원 1999.3.12. 선고 98도3443 판결.

138) 2007.4.4. 선고 2006고단2090 판결.

으로 문화재수리기능보유자인 상피고인 김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신00의 편취 범의 및 공모,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여 횡령죄나 보조금지원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보다도 죄질과 형량이 훨씬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주지로 있는 해당 사찰은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후에는 일용노무비 등 공사비용 전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하였다.

사실상 건설업 명의대여자인 (주) 00산업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고, 실제 공사업자인 김 00으로부터 실제 공사비용을 초과한 액수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시주 명목으로 돌려받은 점, 신00이 주지로서 중무회의 참석이나 사무국장 등 사찰관계자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아 공사대금의 지급 등 진행상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상의 판례들에 비추어 대법원 판례는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법 제40조 부정수급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¹³⁹⁾

139)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1976년 제1차 경제범죄대책법에 따른 개정 이후, 형법 제264조에 보조금사기죄를 두어 이와 관련된 범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조금관리법과 같은 보조금등적정화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법원에서 보조금의 부정취득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오고 있다.

(2) 편취금액의 범위

(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의 편취금액에 관한 판례의 입장 (전액설과 차액설의 경합)

보조금에 대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을 부정하게 부풀려서 과다 청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포함한 전체 액수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여 과도하게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서 전액설과 차액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 산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았다. 즉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라고 판시하여 전액설의 입장을 취하였다.¹⁴⁰⁾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을 차액설로 변경하였다.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대한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140)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5 판결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를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 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진, 앞의 논문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431면은 이러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하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포함한 전체 액수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⁴¹⁾ 그러나 법원이 사기죄 전부에 대하여 차액설로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 국가보조금 과다청구의 경우에 편취금액의 범위(전액설)

상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의 과다청구에 대한 제재는 예산의 부당한 지출에 의한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아무리 부정한 수단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진실하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 등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편취액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2016도841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2015노4075판결에서 사기죄와 더불어 기소된 「보조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정당하게 신청하여도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당초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보조금법」에 위반한다고 봄으로써 보조금관리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액설을 취하고 있다.¹⁴²⁾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는 적어도 방수공사 부분에 대하여 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 여부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거치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합계 5,600만 원의 고용환경개

141) 대법원 2007.4.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142)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도8419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설시 없이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과 동일한 입장으로 판단된다.

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지청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시설 등 투자 지원금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위 지청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을 진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기망을 당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서류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지원금 5,6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위 지청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구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두 판례를 종합하면 신청받을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만큼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전액이 정당한 금액이 되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전액이 편취한 금액이 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보조금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원래라면 받을 수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도 처벌될 수 있게 된 이상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취하되, 편취에 의한 정당한 금액의 국가보조금 수급 역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수급받은 보조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화로운 해결방안일 것이다.

(3) 특경가법 제3조(편취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의 적용

사기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이 경우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의한 처벌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계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착각·부지 등을 일으키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보조금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기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 본조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이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행정관청이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위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걸러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 수급을 위해 작성된 허위의 자료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심사관이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마) 보조금 편취행위에 대한 형의 부과

보조금 편취행위가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위반,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하나의 행위가 세 범죄를 동시에 성립시키게 되어 셋 중에서 더 중한 죄에 정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¹⁴³⁾ 예를 들어 치밀하게 조작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5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특경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받는다.

한편 편취과정에서 업무담당자에게 뇌물을 증여한 경우 이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되어 별도의 형을 받으며, 편취행위로 인해 선고될 형과 합산된다.¹⁴⁴⁾

14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44)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바) 보조금법 제40조 제2호에 의한 처벌

「보조금법」 제40조 제2호는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6조의6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조금법」은 보조금 관리를 위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정보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에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보조금관리정보’란 (간접)보조사업과 보조금수령자의 수급자격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 (간접)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제26의2제3항).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이 중 제1호는 본 조항에서, 나머지 제2호부터 제4호는 「보조금법」 제41조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보조금법」 제40조의 형량이 동법 제41조의 형량보다 높다는 데서 구분의 실의가 있다. 즉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는 행위는 다른 호에서 정한 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커 더욱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관련판례

2016도8419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다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 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5노162 : 보호법익

보조금법 제42조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40조, 제41조와 달리,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 1. 1. 제정 및 시행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세부집행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삼척시장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따라서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 내역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장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업기간 등에 모두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57, 3258쪽), ③ 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보조금을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통합하는 보조금 규모의 기준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 2개의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용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강원도지사도 위 2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3267쪽, 3277쪽), 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별도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3379쪽 이하), ⑥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삼척시가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도 위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⑦ 각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날짜, 공사 착공날짜, 준공예정날짜, 사업구역이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3257, 3258, 3562, 3730쪽), ⑧ 피고인들 및 전직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공소외 13도 검찰에서 강원도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사업은 별도의 구분된 보조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사업인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16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5노4075 : 보호법익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위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위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 보조금관리정보의 위법한 행위, 중요재산의 처리 등에 형벌(징역 5년,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 (용도의 사용 금지에 관한 처벌)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
- (보조금관리정보 등에 관한 처벌) ①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②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③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보조금법」 제26조의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처벌하는 조항
- (보조사업 완료 후 중요재산의 처리 등에 관한 처벌)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없이 ①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②양도, 교환 및 대여하거나 ③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가) 조문의 의의

「보조금법」 제41조 제1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동법 제22조는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본 조 제1호는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국가보조금은 국가 내 각

중 사업 등의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공익성이 짙고,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대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처벌되는 것이다.

한편, 동법 제41조 제2호는 ①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②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③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보조금법」 제26조의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1항 제1호는 「보조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된다.

동법 제3호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없이 ①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②양도, 교환 및 대여하거나 ③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중요재산의 특정용도로의 사용이 보조금지급의 목적이 되는 경우, 주요재산이 국가의 뜻과 달리 사용되거나 양도 등이 이루어진다면 보조금지급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다.

나) 관련사례: 사회적 선도사업체의 국가보조금 횡령사건¹⁴⁵⁾

사회적 선도업체로 지정된 A사의 대표이사 회장, 재무부장 등이 ‘장애인, 노인가정 사회 서비스 사업’명목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32억원 및 민간대응투자금 15억원을 보관하던 중 국가보조금 10억원 및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을 카지노업체 주식 매입, 회사채무 변제,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은행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출장수령증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

145) 김성은, “보조금법제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237면.

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와의 관계

(1)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만약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대표 등이 「보조금법」 제41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조금법」은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별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따라서 국가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

업무상 횡령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 경우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3) 횡령행위에 대한 형의 부과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41조 제1호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특경가법 제3조에 의한 가중처벌 포함)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더 중한 죄에서 정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¹⁴⁶⁾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특경가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받는다.

만약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을 수여받은 후, 이와 같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세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취급되어 뇌물죄 / 보조금법 제40조 위반,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보조금법 제41조 위반 및 횡령죄의 형을 받으며, 각각의 형은 합산된다.¹⁴⁷⁾



관련판례

2016도11103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146)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47)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2017하,1934]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5노 162 : 보조금법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삼척시에서 2013. 2. 28. 강원도 재난방재과에 ‘2013년도 오십천의 12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2013. 4. 30. 강원도에서 삼척시에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도비보조금교부결정 및 지급교부(1차)통지를 하면서 위 사업에 국비 30억 원, 도비 4억 원의 교부결정을 하였고, 이후 4차에 걸쳐 국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 중 도비·시비와 국비의 비율 또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시비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히 위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 사업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전용한 것은 시비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이므로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과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 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판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은 보조금법상 ‘보조사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보조금법 제42조 제1호, 제23조에 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16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4구합329 : 규정 취지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공보불게재])

3)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 승인없는 보조사업의 변경(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의무위반(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형벌 규정

- (승인없는 보조사업 변경 등에 대한 처벌) 보조사업자가 사정 변경으로 인한 보조사업 내용 변경, 경미하지 않는 경비 배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①자료보관의무, ②중앙관서의 장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의무, ③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가) 승인없는 보조사업 변경 등에 대한 처벌

보조금법 제23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러한 변경이 경미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24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이와 같은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다.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금원이고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법 제22조),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41조와 업무상 횡령죄를 동시에 충족하게 되어 양 죄에서 정한 형벌 중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하며(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의 수행명령을 수행해야 하고(보조금법 제26조 제1항), 이와 같은 수행명령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지시가 있을 경우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또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또는 폐지의 승인이 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보조사업 혹은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제27조 제1항). 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상기한 ①자료보관의무, ②중앙관서의 장의 업무정지명령에 따른 업무정지의무, ③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된다.

나아가 자료보관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련한 업무는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반으로 인해 소속 사업의 보조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¹⁴⁸⁾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41조 제1호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더 중한 죄에 정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¹⁴⁹⁾



관련판례

2016도11103 :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8)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149)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장은 2013. 2. 28. 강원도에 오십천지구에 대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이하 ‘이 사건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2013년도 오십천 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대상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지사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2013. 4. 30. 이 사건 대상사업에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국비 30억 원과 도비 4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상사업이 포함된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삼척시장은 국비 30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의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대상사업 중 위 국비 30억 원의 교부대상이 되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강원도지사가 아닌 삼척시장을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5노162 : 보호법익

보조금법 제42조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40조, 제41조와 달리,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 1. 1. 제정 및 시행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세부집행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시·도지사라고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삼척시장은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따라서 강원도지사 입장에서는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하부 내역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장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업기간 등에 모두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3257, 3258쪽), ③ 보조금법 제2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보조금을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 경비 명세를 통합하는 보조금 규모의 기준을 연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바, 위 2개의 사업은 보조금을 통합 운용할 영세한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강원도지사도 위 2건의 보조금 신청

에 대하여 각 별개의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3267쪽, 3277쪽), ⑤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도 별도로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3권 3379 쪽 이하), ⑥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 삼척시가 작성한 관련 공문서에도 위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⑦ 각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날짜, 공사 착공날짜, 준공예정날짜, 사업구역이 다른 점(수사기록 제4권 제 3257, 3258, 3562, 3730쪽), ⑧ 피고인들 및 전직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공소의 13도 검찰에서 강원도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사업은 별도의 구분된 보조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되어있던 전체 사업비 중 1,991,715,600원을 '오십천생태하천조성공사'의 준공금 명목으로 공소 외 1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이라는 것인바, 위 행위가 보조금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이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전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십천의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개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보조사업인 '오십천의 12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16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합법률정보 판례)

2012헌마1030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고의범의 범죄전력과 보조금 법과의 관계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범죄전력을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소정의 범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범죄, 유기·학대 또는 횡령·배임 등 형법 제

28장·제40장 소정의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를 결정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고의범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범죄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7년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자는 그 날부터 7년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사항은 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고의범 중 일부로 한정하고, 선고형에 따라 그 제한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1030전원재판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헌공제 226호,1239]) Casenote.com)

2014노1186 : 조문 취지

보조금법 제27조 내지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위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결국 보조금법 제42조 제4호, 제27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위와 같은 심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감면받은 사실 또한 위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기존 신청내역대로 모든 공사를 마쳤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고려요소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감면 받은 공사대금의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당해 보조금을 일부 감액할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곤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신청내역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실적보고 행위가 거짓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1186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제] 중 합법률정보 판례)

2014구합329 : 조문 취지

보조금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등 당해 사업 내에서의 경비의 전용을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목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29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공보불게재]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해당하는 벌칙에 대해 행위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인 및 법인의 대표까지도 양벌하여 처벌하는 규정
 - ①법인의 대표자, ②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③법인의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40조부터 제4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당사자 뿐 아니라 법인 및 법인의 대표까지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가) 조문의 의의

법인의 사무는 결국 자연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여기서 실제 사무를 행하는 행위자는 종업원이 되며, 법인 혹은 대표는 그러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종업원이 보조금관리 사무를 하면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종업원은 보조금 관련 처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법인 혹은 대표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법인 혹은 대표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이 수행한 보조금사무는 본디 법인 혹은 대표의 사무라는 점, 법인 혹은 대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인식 하에 종업원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법인 혹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기에 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처

벌규정들은 대부분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법인 혹은 대표 역시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른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문은 그 중 하나로 ①법인의 대표자, ②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③법인의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40조부터 제4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당사자 뿐 아니라 법인 및 법인의 대표까지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다. 사용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는 피용자에 대한 선임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처벌받는 피용자의 범위는 선임감독의무가 존재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양벌규정은 법인 혹은 대표가 자신의 사무를 위임한 종업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대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¹⁵⁰⁾. 또한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업원의 선임감독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종업원 및 법인의 범위

본 조항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으로 종업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 판례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를 모두 종업원으로 보아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계약직 사원 모두가 종업원의 범주에 포함된다(대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도 11264 판결 등). 따라서 보조금을 수급한 기업에 고용된 자라면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합병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 비록 동일한 구성원과 조직 체계 등을 가진 새로운 법인이 형성되더라도 둘은 다른 법인격을 가지므로 소멸된 법인의 종업원의 불법행위

150)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했던 과거의 양벌규정이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양벌조항이 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로 인해 소멸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¹⁵¹⁾

다) 처벌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영업주가 처벌된다고 하여 행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제42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울러 양벌조항의 처벌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 형식상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입장이다(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따라서 처벌대상인 영업주는 법인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따라 판단되며, 고용자의 명의로 대표를 세운 경우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00. 10. 27. 2선고 000도3570 판결).

라)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을 교부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횡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¹⁵²⁾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보조금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경제·기술·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사용이 요구되는 점, 보조금의 편취 및 횡령 등에 따른 세금납비·공적서비스 마비·신뢰 저하의 피해가 더욱 큰 점에 비추어 양벌규정의 적용이 긍정된다.

151) 그러나 형법은 행위시의 관계 및 지위를 기준으로 처벌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소멸된 법인의 대표 등은 법인이 소멸된 이후라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152) 원래 국가의 사무이나, 국가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을 한 사무를 말한다.



관련판례

2015노162 :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구 법 제2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이지만, 구 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1호의2·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국·도비 보조금교부신청서, 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삼척시의회 제출자료에 포함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의 주무부서는 '건설과'인 사실, 사업계획 수립·보조금 신청·지방하천정비사업 실적보조가 모두 '건설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지며, 삼척시 부서별 업무안내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은 건설과 하천계의 업무담당으로 되어있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삼척시장이나, 삼척시장의 위임 등에 따라 삼척시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건설산업기본법의 양벌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보조금법 제43조 역시 그 취지는 각 조의 위반행위를 보조금사업자가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자와 보조금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보조금법 제43조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16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www.klri.re.kr

—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3

결론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3 결론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8년 전체 예산 429조원 중 국고보조금 전체규모는 전년대비 12.2%가 증가한(+7.3조원) 66.9조원의 규모이며, 위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50.2조원이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16.8조원을 차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66.9조원 중 복지분야 37.8조원(56.5%), 농림수산분야 8.4조원(12.5%), 환경분야 4.5조원(6.7%), 문화·관광 4.1조원(6.2%),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분야 3조원(4.5%), 교통및물류분야 2.9조원(3.9%) 순서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30.8조원(46.0%), 농림축산식품부 6.4조원(5.0%), 국토교통부 5.9조원(8.8%), 고용노동부 5.4조원(8.0%), 환경부 4.4조원(6.6%), 문화체육관광부 3.4조원(5.0%), 산업통상자원부 2.1조원(3.2%), 행정안전부 1.3조원(1.9%) 순서이다.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든 민간이든 보조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내용이 추상적인 규정이 많고, 이에 대한 충분한 판례¹⁵³⁾나 해석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조금분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뿐만 아니라,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53) 주로 형사분야에 관한 판례가 많고,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본 해설서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관계자들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종합적인 이해 및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www.klri.re.kr

—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4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apter 04 참고문헌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단행본



-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2014.
- 김상용, 채권각론, 제2판, 화산미디어, 2014.
-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채권각론II], 박영사, 2003.
- 김황식, 민법주해 IV권-물권(1)(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2009.
- 노종천, 채권법, 동방문화사, 2015.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제13판, 2016.
- 송덕수, 물권법, 제3판, 박영사, 2017.
-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7.
- 송덕수, 민법총칙, 제4판, 박영사, 2018.
-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18.
- 양창수, 민법주해 XVII권-채권(10)(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2012
- 임한흠, 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칙(5)(편집대표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제12판, 20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4판, 201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5판, 201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제24판[2016년판], 2016.

논문



김병기,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2권 제1호, 2009.

김성은,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

김충목·강민규,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43권 제2호, 2009.

김지영,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 검토-”, 행정법연구 제37호 2013.

김형석, “제3자의 변제, 구상, 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중범김동희교수정년기념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박기병,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과 경쟁자소송”, 관대논문집 제24권 제2호 1996.

박상진,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1집 제1호, 2017.

박성민·이현정, “국가보조금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외법논문집 제35권 제3호, 2011.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l'impr· 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행정법연구제35호, 2013.

- 박현정,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 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2호, 2012.
- 선중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 57집 제3호 2016.
- 성낙현, “보조금사기죄의 형법예외의 도입에 관한 논의”, 비교형사법 연구 제14권 제1호 2012.
- 오준근, “경제행정법상 자금조성행정수단으로서의 보조금제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넓은 의미의 보조금 개념에 입각 하여-”, 공법연구 제23권 제3호, 1995.
- 윤진수,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 호, 2014.
- 이정기, “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안암 법학 제53집 2017.
- 장선희,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유형 및 반환에 관한 연구”, 공법학 연구 제11권 제4호, 2010.
- 정호경·선지원,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 정책 -예외적 허용요건 과 통제방식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3집 제2 호 2014.
- 정기웅, “부당이득의 유형적 고찰”, 정책과학논총 제6권, 1990.
- 한견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금행정”, 저 스티스 제31권 제2호(통권 제48호), 한국법학원, 1998.
- 허강무, “보조금행정의 공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3.
- 허강무, “보조금행정에 대한 법적통제”, 법학연구 제23집 2002.

저자약력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전주열(田周烈)

-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교 법학 박사(공법 전공)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現)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석(金東奭)

- 한양대 법대 졸업
-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9기)
-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대위원, 법제위원회 위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한국관광공사 법무팀장
- 現) 기획재정부 근무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발행일 2018년 8월 16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ISBN 978-89-6684-777-8 93360 값 25,000원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